

조선후기 開城의 도시구조와 상업*

高東煥

目 次

- | | |
|------------------|-------------------|
| 1. 머리말 | 3. 개성상인의 상업활동과 자본 |
| 2. 상업도시 개성의 도시구조 | 축적 |
| | 4. 맺음말 |

【 초 록 】

본 연구는 農本體制하에 상업억제정책을 강하게 유지했던 조선왕조에서 왜 유독 개성지역에서만 末利를 드러내놓고 추구하는 상업이 영위할 수 있었는지를 개성의 도시구조와 개성상인들의 구체적인 상업활동을 통해 살펴본 것이다. 개성에서 상업이 용인된 까닭은 상인 중심으로 구성된 주민구성, 화폐경제를 기반으로 한 재정운영의 특성때문이었다. 토지와 家戶, 人丁에서 수취한 각종 賦稅를 기초로 운영된 대부분의 郡縣과 달리 개성은 상인에게 거둔 세금과 금전대부를 통한 이자수입을 재정의 기초로 삼지 않을 수 없었다. 상업이윤을 재정의 근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조선사회의 강력한 억말정책하에서도 개성에서는 상업을 용인하고 권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개성은 조선후기이후 영역의 확장,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는 도시였다. 1796년(정조 20) 개성부는 금천군(소남면, 대남면)과 장단부(사천이서지역) 일부와 1823년(순조 23)에는 풍덕부 전체를 합병하였다. 개성의 인구추세를 보면, 15세기 중엽 8,372명이었지만, 1756년 34,285명, 1855년경에는 75,482명으로 증가하였다.

필자 : 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 본 연구는 2007년 태평양학술문화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私商을 대표하는 개성상인의 상업활동은 매우 다양했다. 개성부내의 상설점포인 시전상업, 전국적 行商과 都賈商業, 중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한 무역, 그리고 개성상인들 사이에서 행해진 금융활동과 인삼의 재배와 경작, 나아가 홍삼의 제조와 유통에 이르기까지 개성상인들의 활동영역은 상업분야 외에도 농업과 금융, 제조업에까지 미쳤다. 개성상인들은 인삼유통권 장악을 기초로 중개무역에 참여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개성상인들은 국내 상업과 국제무역에서 축적한 자본을 광업이나 삼포업에 투자하였다. 개성상인들의 자본규모는 1874년의 4개월동안 상품구입 총액은 10만 3,469냥에 달할 정도였다.

주제어 : 개성, 상업, 도시구조, 조선후기, 인삼, 홍삼, 시전

1. 머리말

조선후기 개성상인들은 전국을 무대로 하는 행상활동은 물론 청나라와 일본을 연결하는 국제무역, 나아가 인삼재배와 홍삼제조업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나감으로써, 오늘날 상인정신을 전형적으로 구현한 대표적인 집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개성상인들의 상업경영은 복식부기와 상업사용인제도, 독특한 금융제도인 時邊制 등 각종 상관습의 합리적 운영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본축적과 그 자본의 생산부분에의 투자는 우리나라 중세말기의 근대적 지향을 보여주는 징표로도 이해되고 있다.¹⁾

개성상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인으로 각인된 것은 이와 같은

1) 오성, 2002, 「한말~일제시대 개성의 市邊制」『한국근현대사연구』 21; 홍희유, 1986, 「17세기이후 인삼재배의 발전과 자본주의적 삼포경영」『역사과학』 1986년 3호; 양정필, 2002, 「19세기 개성상인의 자본전환과 蔘業자본의 성장」『학림』 23.

상업활동에 있어서 전문성과 합리성을 지녔다는 점 때문만은 아니다. 개성상인들은 상업이윤을 추구하는 상인이면서 동시에 민족적 성격을 지닌 상인이었다. 개항이후 우리나라의 시장은 일본과 중국상인들에게 잠식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러한 시장침탈의 위기에 직면하여 조선후기 가장 대표적인 私商세력이었던 京江商人들은 대부분 외래자본에 종속되어 寄生化된 반면, 가장 마지막까지 외래상업자본과 경쟁을 벌였던 상인세력이 바로 개성상인들이었다. 외래상업자본이 가장 먼저 침투한 시장은 개항장을 중심으로 한 浦口市場圈이었다. 전통적 帆船으로 포구시장을 장악했던 京江商人들은 근대적 기선으로 무장한 외래상업자본에 대항하여 포구시장권을 방어해낼 수 없었다. 반면 개성상인들은 전국 각지에 松房이라는 지점을 운영했기 때문에 육로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장시시장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개성상인의 장시 장악은 외래상업자본의 내륙시장 진출을 억제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²⁾

이처럼 개성상인의 전반적인 상업활동에 대해서는 기왕의 상업사 연구에서 상당부분 해명되었다.³⁾ 그러나 개성상인이 다른 지역의 상인과 달리 전국적인 상인으로 성장하게 된 요인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명되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개성상인연구의 대부분은 개성 ‘지역’과 분리되어 개성 ‘상인’의 개별적인 상업활동과 상업관습에 그 초점이 맞추어 연구되었다. 그러므로 農本體制하에 상업억제 정책을 강하게 유지했던 조선왕조에서 왜 유독 개성지역에서만 末利를

2) 고동환, 1994, 「포구상업의 발달」 『한국사시민강좌 - 조선후기의 상공업 -』 9, 일조각.

3) 조선시대 개성상인과 개성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강만길, 1970, 『朝鮮後期 商業資本의 發達』, 고려대 출판부; 고동환, 2001, 「조선시대 개성과 개성상인」 『역사비평』 54; 박평식, 2004, 「조선전기 개성상인의 상업활동」 『조선시대사학보』 30; 양정필, 2002, 「19세기 개성상인의 자본전환과 蔘業자본의 성장」 『학림』 23; 오성, 1992, 「한말 개성지방의 蔘圃主」 『고문서연구』 3.

드러내놓고 추구하는 상업의 영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되지 않았다. 또한 개성상업이 번성한 요인으로 고려왕조에 충성하는 개경주민들이 과거 응시를 기피하여 생존의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 상업이었다는 점을 꼽고 있다. 그러나 이 점은 조선 전기 개성 상업의 설명할 때 유효하지만, 조선왕조가 개창되어 300년이 지난 조선후기 개성의 상업번성을 설명하기에는 설득력이 약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상인들의 상업 활동만을 분리하여 이해하는 기왕의 상업사 연구와 달리, 개성이라는 도시의 특성과 상업활동을 유기적인 관련 속에서 해명함으로써, 개성상인에 대한 총체적 이해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상업도시 개성의 도시구조

1) 상인 중심의 주민구성

개성 주민의 성격에 대해 18세기 중엽에 쓰여진 『擇里志』와 1802년 간행된 『松都續誌』에서는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택리지』에서 李重煥은

洪武 壬申年에 우리 태조가 공양왕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고 도읍을 한양으로 옮겼다. 왕씨의 신하였던 世家와 大族중에서 태조에게 항복하고자 아니하는 자는 그냥 개성에 남아 따라가지 않았는데, 그들이 살던 동리를 지방사람들이 杜門洞이란 하였다. 태조는 그들을 미워해서 개성 선비에게는 백년동안 과거를 보지 못하도록 명하였다. 그리하여 남아서 살던 자의 아들과 손자의 대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평민이 되어 장사하는 것을 생업으로 삼고 선비의 학업은 닦지 아니하였다. 마침내 3백년이래로 개성에는 사대부라는 명칭이 없어졌고, 경성의 사대부들도 개성에 가서 사는 자가 또한 없었다.⁴⁾

라고 하여, 조선왕조에 복속하지 않았던 개성주민들은 과거를 통한 入仕의 기회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상업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밖에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중환의 언급은 오늘날까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이다. 그러나 『松都續志』에서 金文淳은

列聖朝에서 특별히 軫恤하는 은혜를 입어 개성의 모든 士民들이 새롭게 되어 다른 군현보다 훨씬 깨끗하게 교화되었다. 그럼에도 온 세상사람들이 개성주민들을 賤視하고 侮蔑하여 더불어 사귀거나 말을 건네려 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사람들은 말하길 개성에 거주하는 자는 모두 장사치라고 말한다. 그러나 무릇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어 재화를 통하게 하는 것은 모든 곳에 행해지는 것이다. 杜門諸子들이 선비가 되길 원하지 않고, 상인이 되길 원했다는 얘기는 비록 한때의 충성에서 나온 얘기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후세사람들이 꾸며낸 얘기인 것이다. 도덕문장의 선비와 忠孝節烈의 인사들이 간간히 배출되는 것을 보아도 이처럼 논할 수 없는 것이다. 저러한 여항에서 떠도는 이야기로서 한 고을을 誣陷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⁵⁾

라고 하여 이중환과는 전혀 다른 견해를 제기하였다. 김문순은 조선초기 한때 고려왕조에 대한 충성으로 장사에 어쩔 수 없이 종사하긴 했지만,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도덕문장의 선비와 忠孝節烈의 인사들이

4) 李重煥, 『擇里志』 八道總論 京畿.

5) 『松都續誌』 風俗.

배출되는 고을이므로, 장사치들만이 거주하는 도시로 멸시하는 것은 후세사람들이 꾸며낸 얘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후기 개성주민의 성격에 대한 이와 같은 두가지 상반된 견해 중에 어느 쪽이 사실에 부합한 것인가. 조선시대 각종 연대기 기록을 통해 그 진위를 살펴보도록 하자.

조선왕조는 신왕조를 개창한 이후 개성 주민들을 한양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정책을 취하였다. 이 정책에 호응하지 않고 개성에 잔류한 자들은 신왕조에 충성하지 않는 자들로 지목되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科田의 혜택도 부여되지 않았다.⁶⁾ 1485년(성종 16) 흉년으로 모든 지역에서 장사를 금했을 때도, 개성만은 예외적으로 장사를 허락하였다. 풍년일 때도 개성주민들은 장사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다. 토지가 적었으므로 개성주민들에게 있어 상업이 유일한 생계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전기 개성상인들은 전국을 무대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襦衣나 목면류, 농기류 등을 판매하였다.⁷⁾ 개성의 남자들은 겨울철을 제외한 대부분을 개성을 떠나 장사하였다. 그러므로 개성의 승려들이 홀로 남겨진 부녀자들을 희롱하는 사건도 자주 발생하였다.⁸⁾ 이처럼 조선전기 개성은 상인과 수공업자가 대다수를 차지한, 한양과 다를 바 없는 도시였던 것이다.⁹⁾

6) 『태종실록』 권23, 태종 12년 4월 庚申. “舊京無有受田者 故其市易不見用米 且前年早乾之變 畿甸尤甚 故民之飢者衆 曾納品米及戶米者 毋給楮貨 還其米 則民可聊生矣.”

7) 『성종실록』 권181, 성종 16년 7월 甲戌. “開城府留守金永濡來啓曰 今年荒 一禁諸道興販之人 開城府民多田少 雖年豐 非興販無以爲生 其興販之物多襦衣絲絮農器之類 皆民間切用 本府倉儲數少 賑給甚難 請許興販.”

8) 『성종실록』 권290, 성종 25년 5월 乙未. “開城府留守洪興馳啓 府內居民 專務興販 出入遠方 其妻獨存 而境內寺僧假托善事 出入閭閻 以至留宿 略無畏忌 有關風教.”

9) 『성종실록』 권277, 성종 24년 5월 辛巳. “開城府留守 韓僩來啓曰 兵曹以本府城內者 皆工商之徒 與京中無異.”

조선전기 개성 주민이 상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이중 환과 김문순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후기의 인구구성은 어떠했는가. 1648년에 편찬된 『松都誌』에는 ‘남자들은 열 살이 넘으면 行商을 나간다’고 기록하고 있으며,¹⁰⁾ 17세기 후반 柳馨遠이 편찬한 『東國輿地志』에도 ‘주민들이 行商으로 業을 삼는다(民業行商)’고 기록하고 있다.¹¹⁾ 1761년(영조 37)에도 주민들이 봄철에 행상을 떠나 겨울 철에야 돌아오기 때문에, 매년 봄가을에 실시하는 군사훈련도 개성에서는 5~6년에 한번만 행해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¹²⁾ 이러한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조선후기에도 개성은 여전히 상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였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순은 다른 지역 못지않게 문장가와 忠孝節烈의 인사가 배출되는 고을로 개성을 높이 평가하고, 장사치들의 고을로 멸시해서는 안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19세기 초 이와 같은 언급이 가능했던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주지하듯이 조선사회는 18세기 이래 육상교통과 해상교통의 발전에 힘입어 상업이 전국적으로 성장하였다. 토지와 노비에 기반했던 財富 또한 화폐로 변해갔다.¹³⁾ 상업을 천시하던 관념도 약화되었고, 이에 따라 상업자본을 축적한 개성의 위세도 높아졌다. 이와 함께 19세기 정치도 세도정치로 변모하였다. 세도정치는 소수의 벌열가문에 의해 권력이 독점되는 정치운영 형태였다. 이러한 정치운영이 가능했던 것은 상업이윤의 대부분을 소수의 벌열가문이 장악했기 때문이다. 상업이윤의

10) 『松都誌』(1648년) 土俗. “男踰十歲 便業行商 女入土宇 終歲結笠.”

11) 『東國輿地志』 開城府 風俗.

12) 『비변사등록』 영조 37년 2월 2일. “松都軍卒 不務農作 專以商賈爲業 每當春初 散之八路 徵發之際 動費數朔 失業者居多 故松營習操 每慮此弊 間五六年一行.”

13) 고동환, 1998, 『조선후기 서울상업발달사연구』, 지식산업사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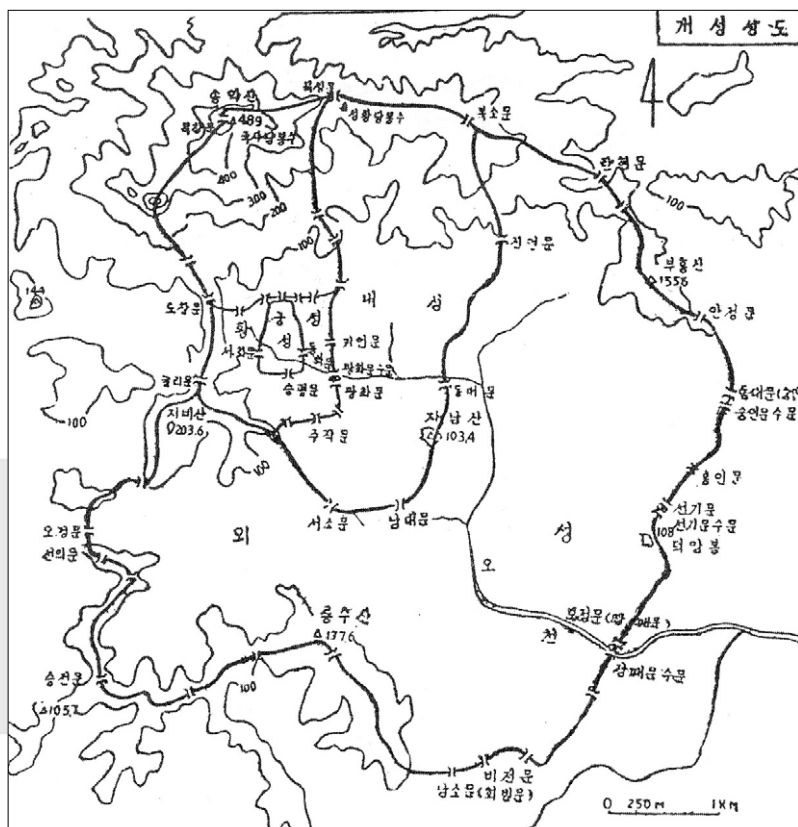
독점은 봉당정치기 중소지주인 사림세력간의 연대하에 운영되었던 봉당정치와는 달리, 소수의 세도가문만에 의한 독점적 정치운영을 가능케 했다.¹⁴⁾ 세도정권의 핵심인 안동 金門의 일원이었던 김문순이 상업적 부로 번성한 개성을 높이 평가한 것은 이와 같은 개성의 위상 제고와 세도정치기 상업자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었다. 조선후기 개성은 전통적인 상인세력의 성장에 따라 실학과 북학사상의 요람으로 거듭나게 된다.¹⁵⁾ 이와 같이 개성이 새로운 사조를 선도하는 도시로 변모한 것은 일반 군현과 달리 상인중심의 도시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2) 개성의 도시공간과 商街

개성은 고려왕조의 수도였다. 조선왕조는 易姓革命이라는 방식으로 개창됐기 때문에, 정복왕조와 달리 시전이나 관아 건물 등 도시시설 대부분이 온존될 수 있었다. 대구나 평양, 전주와 같은 감영이 소재한 행정중심지가 아니면서도 개성이 대표적인 상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상인중심의 주민구성 외에도 이와 같은 도시기반시설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후기 개성의 도시공간은 다음의 <지도 1>에서 보듯이 皇城과 宮城, 內城, 羅城의 4중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14) 고동환, 2005, 「조선후기 상업과 국가권력」 『안동사학』 9·10 합집.

15) 유봉학, 1993, 「조선후기 개성지식인의 동향과 북학사상 - 최한기와 김택영을 중심으로 -」 『규장각』 16; 원유한, 1996, 「開城, 조선후기 실학사상의 요람」 『동국역사교육』 4.



〈지도 1〉 조선후기 개성의 도시공간¹⁶⁾

개성의 도시공간은 고려시대 전성기에는 나성 밖의 예성강까지 훨씬 넓었으나, 조선왕조 개창이후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羅城 안 지역으로 축소되었다.¹⁷⁾ 조선후기 개성의 핵심도로는 內城의 남문인 남대문밖의 남북과 동서를 잇는 十字街였다.¹⁸⁾ 1918년 제작된 〈지도 2〉에서 우리

16) 전룡철, 1980, 「고려의 수도 개성성에 대한 연구」 『역사과학』 2, 3호.

17) 『松都誌』(1782년) 戶口. “前朝全盛時 羅城之內 閭閻櫛比 午正門外至後西江 屋幾相接 鼎遷之後 日就凋耗 昔則一部爲二萬餘戶 今通四部七面 僅六千餘戶(舊誌所載).”



〈지도 2〉 1918년 개성 중심부의 도로망

는 중심도로망인 십자가의 외형 뿐만 아니라, 도시공간이 나성 안쪽에 위치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성에는 수도 한양과 마찬가지로 상설점포인 市廛이 있었다. 개성의 시전은 고려의 시전을 계승한 것이다. 고려때에는 개경의 廣化門에서 十字街에 이르는 도로의 좌우변에 1,008間の 長廊을 건축하여, 몇 개의 칸으로 이루어진 점포마다 각자 따로 상호를 붙여 영업을 하였다.¹⁹⁾ 태조 이성계는 1394년(태조 3)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개성주민들을 강제로 한양에 이주시킴으로써 개성의 시전은 붕괴되었다. 그러나 한양으로 천도한 지 5년만인 1399년(정종 1)에 정종은 다시 개성으로

18) 개성의 도시구조에 대해서는 고려시대 개경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연구를 들면 다음과 같다.

박용운, 1996, 『고려시대 開京연구』, 일지사; 한국역사연구회, 2002, 『고려의 황도 개경』, 창작과 비평사; 김창현, 2002, 『고려 개경의 구조와 그 이념』, 신서원; 서성호, 1994, 「한국중세의 도시와 사회 - 고려시대 개경의 경우 -」 『동양도시사학의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홍영의, 2000, 「고려전기 개경의 오부방리 구획과 영역」 『역사와현실』 38; 서성호, 2000, 「고려시기 개경의 시장과 주거」 『역사와현실』 38.

19) 서성호, 2000, 앞의 논문 참조.

移御하였다. 정종이 개성으로 이어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언급한 바처럼 개성의 도시기반시설이 그대로 잔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왕과 종친, 관료들이 개성으로 옮겨갔어도 종묘와 사직은 한양에 있었다. 그러므로 舊都인 개경과 新都인 한양이 도읍으로서 위치를 동시에 갖는 一國兩京體制가 1405년(태종 5) 한양환도시까지 지속되었다.²⁰⁾

1405년 한양으로 환도하면서 태종은 태조 때와 마찬가지로 개경의 주민들을 한양으로 이주시켰다. 그러나 태조 때와 달리 한양에 거주하던 사람을 소개시키는 조치도 없었으며, 개경의 주민들에게도 이주를 강제하지 않았다. 물론 관원과 그 가족들은 강제 이주시켰으나, 상인이거나 서민들은 강제성을 부여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유인책을 통해 한양이주를 촉진하였다. 이를 위해 태종은 개경의 시장개설을 금지하였다. 개경주민들은 생필품을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는 도시민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시장이 열리는 한양으로 이주해야 했다. 시장금지정책은 한양 환도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5년간 더 지속되다가 1409년(태종 9)에 이르러 개경 인구가 날로 줄고, 도시가 점차 황폐화될 지경에 이르자 비로소 중단되었다.²¹⁾ 이후 개성의 시전은 고려 개경의 시전에 비해 훨씬 축소된 채 운영되었다.

조선후기 시전은 개성의 상업중심지인 남대문 안팎, 十字街의 남북으로 뻗은 도로 양측에 위치하였다. 1925년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白木廛과 緇廛은 남대문 안쪽에 위치하였고, 靑布廛은 남대문 밖에 위치하였다.²²⁾ 남대문 밖 東部の 京市里는 지명으로 추정컨대 시전이 집중 분포했던 지역이었을 것이다. 또한 西部에는 上紙廛里, 下紙廛里가 있었는데, 이곳에 상지전과 하지전 두 곳이 소재했을 것이라고 추정된

20) 고동환, 2005, 「조선후기 한양의 형성과 도시구조」『지방사와 지방문화』 8-1.

21)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3월 丙午.

22) 善生永助, 1925, 「商人及商廛」『朝鮮人の商業』, 朝鮮總督府, 13~17쪽.

다.²³⁾ 시전은 매일 남대문 안팎에서 열렸는데, 해가 뜨면 사람들이 모이고, 아침을 먹을 때쯤이면 과하는 朝市 성격의 시장이었다.²⁴⁾ 다른 군현의 유통기구가 五日場체제에 의해 유지되었던 것에 비하면, 상설 시장의 기능을 했던 개성의 시전은 훨씬 진보된 성격의 유통기구였다.

개성에는 한양의 懸房과 마찬가지로 쇠고기를 판매하는 牛肆가 두 곳이 있었다. 牛肆는 1721년(경종 1) 留守 金在魯가 개성의 성균관 전복들의 생계를 위해 서울의 懸房을 본떠 처음 설치하였고, 1741년(영조 17) 유수 徐命九가 다시 한 곳을 더 설치함으로써 牛肆가 두 곳이 된 것이다.²⁵⁾

개성주민의 대부분은 工商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²⁶⁾ 개성은 수공업도 발달한 도시였다. 개성은 국내 유일의 草笠 산지였다. 가는 풀로 엮어 만든 갓의 일종인 초립은 20살 성년식인 冠禮를 한 청소년을 비롯하여, 하급 관원이나 노비까지도 쓰던 것으로서 수요가 매우 많았다. 1648년 『松都誌』에는 ‘여성들은 집에서 초립을 짜는데 평생을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초립생산은 여성들이 담당하였다.²⁷⁾ 1790년(정조 14) 초립 수공업에 종사하는 여공만 3백여명에 달할 정도였다.²⁸⁾ 또한 16세기부터 성장하였던 유기수공업은 18세기에 이르며, 유

23) 『松都志』(1648년) 部坊.

24) 『松都誌』(1648년) 土俗. “東南下里鑄鑄爲業 每日開市於南大門內外 日出而集 食時而罷.”

25) 『松都誌』(1782년) 卷之七 附錄. “英廟庚申 行幸時 御明倫堂 以東西泮村 簫條募民入居事 下教申飭 翌年辛酉(1741) 徐留守命九 倣太學懸房 例給牛肆一坐 使典僕輪回販賣 而曾於辛丑(1721) 金相國在魯 已給牛肆一坐 并此爲兩肆 自是泮村 賴以安集 典僕輩爲二公立不忘碑于香橋外.”

26) 주 9) 참조.

27) 주 10) 참조.

28) 『비변사등록』 정조 14년 7월 26일. “開城留守 具庠所啓(중략) 草笠卽他道所無 獨本府所有者 而自古以來 女人輩 傳子傳孫 刈草手織 受價進排 以爲糊口之資 見其生涯 則結幕懸鶉 不成模樣(중략) 貧殘女工 將無以支保 女工

기수공업 촌락이 형성될 정도로 번성하였다. 유기수공업의 중심지는 東南下里였다.²⁹⁾ 이 밖에 개성은 종이나 천에 기름을 먹여 만드는 유삼(비우장), 초갑(쌈지) 등을 비롯하여 면포의 산지로도 전국에서 손꼽히는 곳이었다.³⁰⁾

3) 행정구역과 인구의 변동

1796년(정조 20)까지 개성부의 행정편제는 羅城안의 동, 서, 남, 북부의 4부와 나성밖의 7개면으로 이루어졌다. 고려시대 皇都로서 위상을 지녔을 당시 개성의 행정편제는 5부 35坊체제였지만, 1466년(세조 12) 세조는 이를 4부 4방으로 축소했다. 동부의 仁興坊, 서부의 義興坊, 남부의 禮安坊, 북부의 智安坊이 그것이다.³¹⁾ 그러나 나성안의 坊制는 조선시대 개성에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만 존속했다. 坊은 원래 중국에서 수도공간을 內城과 外城[羅城]으로 구획하고, 내성 안에는 궁궐이 자리하였기 때문에, 내성 밖과 외성 사이의 공간을 격자형 도로로 구획하고, 구획된 각각의 공간을 坊으로 일컬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 중국에서는 방에 면한 도로쪽으로는 대문을 낼 수 없을 정도로 관리가 엄격하였다. 그러나 개성이 수도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서 이와 같은 坊制는 더 이상 구실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³²⁾

4부와 7개면의 영역을 살펴보면, 북부는 내성안 지역 전체, 동부는

不得支保 則草笠進排 或不無狼狽之患 下詢攸司之臣 自丙午至今 遺在計減之數 木十一同十七疋 趁卽上下 使數三百女工 以全保進排之地.”

29) 주 24) 참조.

30) 정성일, 2005, 「개성상인과 동래상인」 『거상 전국상권을 장악하다』, 두산동아.

31)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 開城府 上, 部坊.

32) 도성의 坊制에 대해서는 고동환, 2007, 『조선시대 서울도시사』, 태학사 참조.

남대문밖 대로 동쪽, 서부는 남대문밖 대로 서쪽, 남부는 남대문밖 猪友橋³³⁾이남과 길 좌우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나성 밖에 위치한 7개면은 東面, 靑郊面, 南面, 西面, 中西面, 北西面, 北東面이었다.³⁴⁾ 각 部, 面별 인구규모는 어떠했는지를 <표 1>을 통해 확인해보자.

<표 1> 1789년 개성부의 部, 面별 인구

4부 7면	호	구
동부	1,381	6,428
남부	1,814	8,668
서부	868	3,549
북부	1,982	8,924
동면	761	3,164
靑郊면	930	3,854
남면	1,612	4,047
서면	534	2,116
중서면	617	2,649
북서면	848	3,195
북동면	728	2,829
합계*	12,075	49,423

전거 : 『호구총수』 *호구총수의 개성부 4부 7면의 호와 구를 합계하면, 호 11,525, 구 49,623명이다. 본문의 서술에서는 표의 합계가 아닌 호구총수 개성부 전체의 호구기록을 사용하였다.

<표 1>에서 보면, 개성부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한 지역은 남대문안에 위치한 북부였다. 고려 궁궐이었던 만월대를 비롯한 주요 전각들이 자리한 북부는 개성의 지배층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이었다. 그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곳은 내성과 멀리 떨어진 남부였고, 서부는 다른 部에 비해 인구가 매우 희소한 지역이었다. 내성안의 四部지역의 인구는

33) 猪友橋는 남대문밖을 흐르는 黑水, 즉 <지도 1>의 오천(烏川)을 가로지르는 다리이다(『新增東國輿地勝覽』 권4 開城府 上, 橋梁).

34) 『松都志』(1648년) 部坊.

27,569명으로 나성 밖 7개면 지역인구에 비해 약간 많았다.

나성 안의 4부 4방체제는 조선말기까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나성 밖의 면지역은 확대되었다. 각부와 면에 소속된 里의 수도 시기에 따라 달랐다. 그 변화를 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조선후기 개성부 部面 里數의 시기별 변화

	1648년(松都誌)	1782년(松都誌)	1802년(松都續誌)	1881년(中京誌)
四部	30리	17리	17리	14리
	북부 10리	북부 7리		북부 5리
	동부 8리	동부 3리		동부 3리
	서부 5리	서부 2리		서부 2리
	남부 7리	남부 5리		남부 4리
面	7면 38리	7면 43리	9면 20리	13면 109리
				동면 5리
				청교면 6리
				남면 11리
	동면 4리	동면 4리		서면 6리
	청교면 3리	청교면 5리		중서면 5리
	남면 9리	남면 10리	7개면 13리	북서면 7리
	서면 6리	서면 6리	대남면 4리	북동면 6리
	중서면 4리	중서면 4리	소남면 3리	대남면 4리
	북서면 9리	북서면 7리		소남면 3리
	북동면 3리	북동면 7리		중북면 19리
				동남면 15리
				서남면 8리
				읍북면 14리

<표 2>에서 보듯이 나성안 지역인 4부에 소속된 里數는 1648년 30, 1782년 17, 1802년 17, 1881년 14개리로 점차 줄었으며, 7개면의 里數는 1648년 38, 1782년 43, 1802년 13, 1881년 46개리로 19세기 후반에 크게 늘고 있다. 19세기 초까지 里가 줄어드는 것은 마을이 점차 대형화되면서 이웃한 마을들을 병합함으로써 행정의 간소화 등의 필요

때문이라고 추측되지만, 19세기 후반 7개면 지역의 里數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잘 알 수 없다.

개성부 행정구역은 다른 군현과 달리 꾸준히 확장되었다.³⁵⁾ 고려 개경을 계승한 도시인 개성부는 다른 군현과 달리 영역이 매우 좁았다. 좁은 토지로부터 산출된 생산물로 재정을 충당하기 어려웠으므로, 주변 지역을 합병함으로써 재정을 확보했던 것이다. 1796년(정조 20) 개성부는 金川郡의 小南面과 大南面, 長端府의 沙川以西지역과 白峙鎭을 병합하였다. 백치진은 원래 1676년(숙종 2) 개성부에 합병되었다가, 1691년(숙종 17)에 금천부로 이속된 지역이었다. 사천 이서지역은 동부의 太廟里와 八字里에 각각 분속되었다.³⁶⁾ 이로써 개성부의 행정구역은 4부 7면 60리에서 4부 9면 72리로 확대되었다. 1823년(순조 23)에는 폐지된 풍덕부 전체가 개성부에 합병되었다. 풍덕부의 8개면은 개성부에 이속되면서 중북면, 동남면, 서남면, 읍북면의 4개면으로 축소되어 합병되었다. 1823년 이후 개성부의 행정편제는 4부 13면 123리로 확장되었다.³⁷⁾

행정구획의 변동과 함께 개성부의 인구도 시기가 내려오면서 크게 증가하였다. 조선시대 개성부의 인구증감추세를 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듯이 개성부의 인구는 15세기 중엽 4,819호, 8,372명이었지만, 1756년에는 9,400호, 34,285명으로, 인구규모는 4.1배나 증가하였다. 비슷한 시기 전국 인구는 2.7배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³⁸⁾

35) 조선후기 개성부 행정구역 확대과정에 대해서는 김태웅, 1999, 「조선후기 개성부 재정의 위기와 행정구역 개편」 『한국사론』 41·42합집,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36) 『松都續誌』 部坊.

37) 『中京誌』 部坊.

38) 愼鏞廈, 權泰煥은 1440년(세종 22) 6,724,000명, 1744년(영조 20)

〈표 3〉 조선시대 개성부의 인구변동

연도	호	구	전거
15세기중엽	4,819	8,372	세종실록지리지
1756	9,400	34,285	松都誌(규 4983) 호구
1780	11,450	38,873	松都誌(규 4983) 호구
1789	11,525	49,623	戶口總數
1801*	11,918	43,077	松都續誌(규 4790-15) 호구
1822	12,975	47,776	中京誌(규 10734) 호구
1855**	17,946	75,482	中京誌(규 10734) 호구

*) 1796년 금천의 대남면, 소남면, 장단 沙川以西 합병

**) 1823년 풍덕현(3,437호, 14,556명) 합병

개성부 인구는 전국 인구증가추세에 비해 훨씬 높았던 것이다. 18세기 후반이후에도 개성부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756년 3만4천285명에서 1855년경에는 7만5천482명으로 증가하였다. 그 사이 개성부에 합병된 지역의 인구를 감안해도 1백년동안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비슷한 시기 전국인구가 감소했다는 점과 비교하면,³⁹⁾ 이와 같은 개성의 인구증가는 상업 번성 외에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을 것이다.

1789년 호구총수에 기록된 개성의 인구규모는 49,623명으로, 같은 자료에서 서울의 189,153명, 평양의 107,592명에 비해 작았다. 그러나 개성의 공간 폭이 數十里 정도로 좁았다는 점을 감안하면,⁴⁰⁾ 개성의 인구밀집도는 다른 군현에 비해 훨씬 높았다. 인구밀집도를 비교하기 위한 기준을 1리당 평균인구수로 설정하면, 개성이 다른 군현에 비해 열

18,275,000명으로 전국인구를 추산하고 있다(愼鏞廈·權泰煥, 1977, 「朝鮮王朝時代 人口推定에 관한 一試論」 『東亞文化』 14 참조).

39) 愼鏞廈, 權泰煥은 1744년 18,275,000명에서 1843년(헌종 9) 16,632,000명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추정하였다(愼鏞廈·權泰煥, 1977, 위의 논문 참조).

40) 『비변사등록』 숙종 32년 정월 21일. “本府幅員 不過數十里之地 而田結之役 甚爲煩重 民不能堪.”

마름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표 4>는 호구 총수에서 5만 이상의 인구를 지닌 28개 군현을 대상으로, 인구수와 里數, 그리고 里당 평균 인구수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4> 1789년 주요 군현별 里당 평균인구수

군현	인구	里數	리당 평균인구수
길주	65,202	24	2,716.8
진주	69,495	72	965.2
개성	49,623	60	827.1
정주	50,856	75	678.1
안악	52,739	81	651.1
평양	107,592	206	522.3
수원	57,660	124	465
양주	64,025	140	457.3
성천	58,956	132	446.7
의주	89,970	203	443.2
광주	50,508	131	385.6
영변	52,481	145	362
해주	63,672	185	344.2
충주	87,331	262	333.3
밀양	50,901	157	324.2
강계	60,419	189	319.7
황주	54,061	174	310.1
함흥	71,182	259	274.8
영흥	57,560	214	269
경주	71,956	269	267.5
대구	61,477	253	243
안동	50,603	236	214.4
안주	49,582	279	177.7
전주	72,505	618	117.3
홍주	52,761	474	111.3
성주	54,356	497	109.3
상주	70,497	832	84.7
나주	57,782	769	75.1

전거: 戶口總數

〈표 4〉에서 보듯이 개성의 리당 평균인구수는 길주와 진주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함경도 길주의 리당 평균인구수는 2천7백16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치는 길주의 리 편제원리가 여타 지역과 달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삼남지역을 비롯한 농업중심지대에서는 자연촌의 성장으로 편제리가 점차 해체되고 자연촌락이 리로 편제된 반면, 길주와 같은 산악지대는 여러 개의 자연촌락을 하나의 리로 묶어서 파악하는 編制里 체제가 그대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길주를 제외한다면, 개성은 진주에 이어 리당 평균 인구수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진주에 비해 개성은 군사훈련도 장단지역에서 행해야 할 정도로 땅이 좁았기 때문에,⁴¹⁾ 단위면적당 인구밀집도는 개성이 단연 높았을 것이다. 〈표 4〉에서 보듯이 개성은 대도시였던 평양이나 한양보다 훨씬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이었다. 개성의 도시화는 조선에서 다른 여타 도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전되었던 것이다. 개성의 도시화 정도를 나타내는 단적인 예는 화재의 빈도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일회 화재로 피해를 입는 가옥이 수백채에서 7~80채에 달한다는 사실이다.⁴²⁾ 조선 후기 개성은 농촌으로 둘러싸인 다른 군현과 달리 인구밀집도가 높은 상업도시로 존재하였던 것이다.⁴³⁾

41) 『비변사등록』 영조 23년 2월19일. “開城留守尹得和所啓 松都習操 今方設行 而本府地狹 東門外長湍地 有可合教場處 故曾前亦多設行於此地 今番亦以此列舉行何如 上曰依爲之.”

42) 『비변사등록』 영조 17년 10월 7일. “松都自古失火最頻多 則數百戶 少不下七八十戶.”

43) 고동환, 1998, 『조선후기 서울상업발달사연구』, 지식산업사 참조.

4) 화폐경제에 기반한 재정운영

개성부는 지방이었지만 京職인 留守가 통할하는 고을이었기 때문에 관부의 운영은 한성부와 거의 동일하였다.⁴⁴⁾ 일반 군현에는 좌수와 별감 등 이른바 향임층들이 수령의 政事를 보좌하였지만, 개성부에서는 좌수와 별감과 같은 在地유력자층에 의한 보좌가 없었으며,⁴⁵⁾ 한성부와 마찬가지로 堂上인 留守와 郎廳인 經歷과 都事가 합좌하여 일을 처리하였다.⁴⁶⁾ 한성부에서 채무관련 소송을 담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개성부도 채무관련 소송을 취급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개성을 한양과 동일하게 京都라고 인식하기도 했다.⁴⁷⁾ 광범한 농촌지역을 포괄하는 일반 군현과 달리 주민 대다수가 상인이었기 때문에, 개성부의 운영 또한 도시였던 한성부와 비슷하게 운영된 것이다. 요컨대 개성의 상업도시적 성격으로 인해 개성부가 한성부와 유사하게 운영된 것이다.

개성이 지닌 이러한 상업도시적 특성은 재정운영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648년경 개성부의 토지는 전 1,400여결, 답 750여결에 불과하였다. 1757년(영조 33)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아 成冊한 『輿地圖書』에서 공주와 개성의 토지를 비교하면, 공주의 경우 전과 답을 모두 합하여 원장부 전결이 22,423결(時起結 9,813결)이었던데 비해, 개성은 2,758결에 지나지 않았다.⁴⁸⁾ 1789년 『호구총수』에서 공주

44) 『인조실록』 권28, 인조 11년 11월 戊午. “本府 設官分職 統率坊民 一依漢城府.”

45) 『松都誌』(1782년) 卷之七 附錄. “各邑則有座首別監 而本府獨無 盖以漢城分司 不同於外官也.”

46) 『松都誌』(1648년) 土俗. “本府雖在外方 而設官分職 如京衙門同 堂上郎廳 合坐聽事.”

47) 『비변사등록』 영조 1년 9월 25일. “松都 漢陽 同一京都.”

48) 『輿地圖書』 開城府, 公州.

의 인구는 44,438, 개성의 인구는 49,623명이었다. 개성의 인구는 공주에 비해 5천명정도 많았지만, 토지는 시기결수로 계산하면 공주의 30%에 지나지 않았다. 개성은 인구수에 비해 토지가 훨씬 적은 고을이었던 것이다. 개성의 1인당 경작면적은 一日耕이 보통이었고, 적을 경우 午前耕이나 朝前耕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적은 땅임에도 땅의 토질은 매우 거칠어 곡물보다는 면화를 심기에 적합하였다. 개성부의 경작지는 나성의외부에 주로 위치했는데, 이들 땅도 대부분 濟用監, 掌苑署, 司圃署의 公田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공전 경작을 자신들의 家業으로 삼는 형편이었다. 이와 같은 좁은 토지에서 거두는 전세는 米太를 합하여 470여석에 지나지 않았다. 수원의 전세수입은 米太를 합하여 총 2000석에 달했다.⁴⁹⁾ 전세도 수원부의 23%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토지가 적은 조건에 더하여 개성의 羅城안 지역은 田稅만 있었을 뿐, 다른 賦役이 없었다. 그러므로 개성에서는 戶役이 매우 무거웠다. 개성의 재정은 다른 고을의 지원이 없이는 자립이 불가능한 구조였던 것이다.⁵⁰⁾

개성에서 戶役의 일환으로 운영된 것이 바로 富居案이었다. 개성부에서는 조선초기부터 개성의 부자들을 뽑아 案을 작성하고, 이들로부터 거둔 돈으로 재정을 충당하였다.⁵¹⁾ 이와 같은 富居案은 1625년(인조 3)까지 유지되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부자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들어야 했다. 부자가 파산할 경우, 부자가 아닌 자들로 강제로 부거안에

49) 위와 같음.

50) 『松都誌』(1648년) 土俗. “府內之田 皆沙石之地 種穀者少而種木綿者多 以糞田勤慢計摘花多少 民多田少 一人所耕不過一日 少則朝前午前 濟用掌苑司圃公田甚多 故納稅耕食如家業 外村田場稍廣 而府內人參半往作 四境之內 依京城十里內 只有稅而無他賦 田一千四十餘結 畚七百五十餘結 以此收稅 合米太四百七十餘石 爲府官之祿 使令之供 故多不足 啓請他邑之粟 凡雜役皆出於戶口 田結之役甚歇 而戶口之役頗苦.”

51) 富居案에 대해서는 박평식, 2004, 앞의 논문 참조.

편입시켜 막대한 부담을 지웠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부거안의 방식은 많은 원성을 들어야 했다.⁵²⁾ 그러므로 1638년(인조 16) 留守 李景憲은 대동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폐단을 없앴다. 이경헌은 司倉과 大同廳을 설치하고, 개성 주민 전체를 빈부에 따라 18등급으로 나누어 매달 쌀을 거두어 재정을 충당하였다. 개성부의 대동법은 일반 군현의 대동법과 달리 부자들에게만 집중되었던 호역을 모든 개성주민에게 똑같이 부담 시키는 제도였다. 개성의 대동법은 戶役의 일종이었던 셈이다. 이경헌의 대동법 도입이후 개성주민들은 매우 편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방식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⁵³⁾

이처럼 호역의 대동을 통해 안정되어 갔던 개성의 재정은 17세기 후반 재정지출의 증가로 인해 다시 위기에 처하게 된다. 17세기 후반 청나라와의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청나라 사신은 물론 조선 사신의 행차도 개성에 머물렀고, 이들에 대한 접대비용인 勅需를 개성부에서 부담해야 했다. 사신행차는 적을 경우 1년에 한차례에 불과했지만, 많을 경우 서너차례에 달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그리고 1646년(인조 24)부터 개성상인들이 中江開市에 참여하게 되면서,⁵⁴⁾ 개성부에서는 이들에

52) 『승정원일기』 인조 3년 5월 20일. “開城府富民 必役於天使接待之處(중략) 開城府 一付富民置簿 則至死不能脫去 故如是爲之 若但役於天使時 則渠等亦何至呈訴乎 貴曰 開城府富民置簿之規 自中分貧富抄之 故雖在孺業之人 財富則必付而役之 而今若內奴又除 則開城之弊 必有甚於前日 富益富貧益貧.”

53) 『松都誌』(1648년) 土俗. “舊以市民稍實者 抄錄爲簿 謂之富居 公家百役及使命支供 皆責出於富居 輪廻勒定 戊寅(1638)年間 李景憲爲留守 許洙爲經歷時 行大同之法 擇定大同有司二人 以民產之貧富 定其次第 爲十八等 每月計戶收米 百役皆自公給價 使客支供 設府司 自司中受於司倉 大同廳 而爲之民甚便之.”

54) 『승정원일기』 94책, 인조 24년 7월 16일. “啓曰 中江開市 京中及兩西商賈等 預先知委 前頭起送之意 漢城府及兩西監司處 曾已入啓 分付矣 開城亦多商賈 一體舉行事 留守處行移 何如 答曰依啓.”

게 자금을 지원해야 했다. 勅需비용은 사신 1회 행차에 3,600냥이었고, 봄·가을 중강개시에 소요되는 비용도 1천냥에 달했다.⁵⁵⁾ 그러나 개성부 자체에서 거두어들이는 稅入은 1726년(영조 2)의 경우 田稅 大米 300석, 太 450석, 軍布錢 9천여량에 불과했다. 칙수와 중강개시 지원 비용을 제외한 일상적인 개성부 운영경비는 1년에 1만 2~3천냥에 달하였다.⁵⁶⁾ 통상적인 수입으로는 칙수는 커녕 개성부 자체 운영도 불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재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성부에서는 원금을 조성하여 상인들에게 빌려주어 이자를 얻는 殖利방법⁵⁷⁾과 상인들에게 商賈稅를 거두는 두가지 방안을 마련하였다. 殖利를 통한 재정확보는 1670년(현종 11) 留守 洪處亮이 左右大同廳을 설립하면서 본격화되었다.⁵⁸⁾ 만약 상인들의 형편이 어려워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게 되면, 상인이 아닌 부자들에게도 돈을 대여하여 그 이자를 받아 재정을 충당했다.⁵⁹⁾ 1824년(순조 24)의 경우 개성부에서 殖利하는 원금은 232,275냥에 달했고, 1년의 이자로 73,519냥을 거두고 있다.⁶⁰⁾

55) 『비변사등록』 영조 3년 윤3월 25일. “開城留守趙榮福所啓 本府歲入若干田稅米太及軍布錢外 無他收斂於民者 雖柴草亦皆給價買用 故日用凡百 專以各廳銀貨殖利轉授 (중략) 至於勅需 則一需則應下例不下三千六百餘金 春秋中江開市時 例下一千兩.”

56) 『비변사등록』 영조 2년 3월 20일. “開城留守金相元 同爲入侍時所啓 (중략) 大抵本府一年應用 小不下白金一萬二千兩 而至於歲入 則不過田稅大米三百石 太四百五十石 軍布錢九千餘兩 故日用凡百 專以若干銀貨 殖利轉換 需用常患不足矣.”

57) 주 55), 56) 참조.

58) 『中京誌』 卷之四 官廨. “庚戌(1670)年間 連值凶歉 朔米難收 留守洪公處亮以編戶等第 收聚銀錢 創設左右大同 存本取贏 以爲府中供億之需.”

59) 『비변사등록』 영조 35년 11월 14일. “開城留守南泰齊所啓 近年以來 本府商民 漸益窮敗 不能成樣 故臣於今夏 抄出商賈外稍實民戶 勿論願受與否 一併分給 質銀還納之際 不無呼冤之端.”

60) 『비변사등록』 순조 24년 3월 1일. “開城留守 金履載狀啓則以爲 本府債錢

상인들에게 세금을 거둬 재정을 충당하는 방법은 조선초기 이래 개성부 재정운영의 오랜 전통이었다. 1633년(인조 11) 개성부 進士 高迥等 630인이 개성유수에게 올린 呈狀에 “개성의 상인들과 시전과 상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개성관아의 여러 비용을 충당해온지 이미 2백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⁶¹⁾ 1727년(영조 3) 留守 沈珙은 상고세를 거두는 기관으로 平市廳을 설치하였다. 평시청에서 상인들에게 거두는 商賈稅는 1만5백냥에 달했다.⁶²⁾ 19세기 초 개성에서는 전체 세입 6만여 냥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만 냥을 상고세로 충당하고 있었다. 이 영업세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무려 6,600냥이 富商大賈들에게서 받아들이는 商稅였다.⁶³⁾

이처럼 상업이윤의 일부를 개성부 재정으로 삼았던 것은 상업을 억제했던 조선왕조의 농본적 질서속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개성의 특수성이었다. 앞서 1485년(성종 16) 모든 지역에서 장사를 금하는 조치를 취했을 때 개성만은 예외적으로 장사를 허락하라고 開城留守 金永濡가 앞장서 주장했던 것도 개성의 이와 같은 재정의 취약성 때문인 것이다.⁶⁴⁾ 개성부 재정은 상업이윤이나 금융대출의 이자수입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⁶⁵⁾ 주민 대다수가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에서 개성부

二十三萬二千二百七十五兩零中 前後所捧爲七萬三千五百十九兩零.”

61) 『인조실록』 28권, 인조 11년 戊午. “開城留守鄭斗源馳啓曰 本府進士高迥等六百三十人 呈狀以爲 惟我松京 商賈有征 市廛有稅 布縷粟米蔬果魚肉之出 各就其業而取辦 以應公家大小之需 傳之二百年.”

62) 『松都誌』(1782년) 卷之三 官舍. “平市廳 丁未(1727) 留守沈公珙 罷場設市 收商賈稅 以應勅需 收民烟戶役 修葺公廨 置儒武管摠各一人 各樣錢一萬五百兩.”

63) 홍희유, 1962, 「송도 4개부기에 반영된 송상들의 도고 활동」 『력사과학』 1962년.

64) 주 7) 참조.

65) 『비변사등록』 영조 36년 8월 11일. “松都一歲支放 專賴債息 近年以來 尤益殘敗.”

재정운영은 토지와 人丁에 기반한 일반군현의 재정과 크게 달랐다. 이와 같은 점이 농본체제하에서 상업억제정책을 강하게 펼쳤던 조선왕조에서 개성에서만 未利를 드러내놓고 추구하는 상업이 용인되었던 조건이었던 것이다.

상업이윤과 殖利에 기반한 개성부 재정운영은 상업의 성쇠에 따라 크게 동요될 수 있는 것이었다. 대출을 받은 상인들이 파산하여 이자는 물론 원금조차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개성부는 운영되어야 했으므로 대출원금을 재정으로 지출해야만 했다. 이로 말미암아 원금이 줄어 들고 이자 수입 또한 점차 감소되었다. 이러한 악순환은 개성부 재정에 심대한 타격을 안겨주었다.⁶⁶⁾ 이와 같은 사정은 18세기 말을 계기로 더욱 심화되고 있었다.⁶⁷⁾ 때문에 안정적인 개성부 재정의 확보를 위해 토지로부터 거두는 전세수입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이와 같은 개성부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가 앞서 살폈던 1796년(정조 20) 금천군의 대남면, 소남면, 장단부의 沙川以西지역의 개성부 합병이었고, 1823년(순조 23) 풍덕현의 개성부 통합 조치였다.⁶⁸⁾

주변 군현을 통합함으로써 개성부 재정은 어느 정도 호전될 수 있었지만, 개성부와 풍덕부의 전세수입 32,500여냥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하였다. 그러므로 1823년 유수로 부임한 金履載는 호남과 영남의 환곡 2만석과, 각도의 환곡 이자조 1만2천냥, 그리고 각읍의 군병 番錢 1만9백여냥, 元雜稅 1천5백냥, 新定雜稅 1만1천냥, 그리고 개성상인들에게

66) 『비변사등록』 영조 21년 7월13일. “開城留守吳光運所啓 本府無大段弊瘼而本府地狹 土地所出甚些 以若干銀錢利息 酬應公私 財力元無出處 而利息有限 故割本用之 已多年所 若不及變通 則勢難支堪.”

67) 개성부 재정위기와 이웃 군현의 통합과정에 대해서는 김태웅, 앞의 논문 참조.

68) 『中京誌』 卷之二 部坊. “丙辰(1796)移屬金川大小南兩面 長湍沙川以西 癸未(1823)合屬豐德四面 凡四部十三面一百二十三里.”

대출한 뒤에 거둔 이자 5천냥으로 개성부 재정을 운영하도록 邑事例를 개정하였다.⁶⁹⁾ 상인들에게 대출하여 받은 이자 수입은 82,900냥⁷⁰⁾에 달하는 개성부 전체 재정의 6%로 비중이 크게 줄었다. 수입항목별 비율을 보면 전세가 전체의 40%, 잡세와 군역·환곡이 53%로, 여타의 다른 군현 재정과 거의 유사하게 편성되고 있다.

그러나 김이재의 이와 같은 재정개혁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읍사례가 개정된 이듬해인 1824년(순조 24) 개성부에서는 원금 232,275냥의 이자로 총 73,519냥을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⁷¹⁾ 읍사례에서는 이자수입이 5천냥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읍사례에서 제시한 전체 재정규모 82,900냥의 90%가량인 73,519냥이 이자수입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이다. 김이재에 의해 전세와 환곡등에 기초한 재정운영이 시도되었지만, 이러한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고, 개성부 재정은 여전히 殖利에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69) 『中京誌』 卷之四 官廩. “本府經用 專資於債殖 而數十年來 債弊滋甚 各庫債本 盡入虛簿 無可取用 癸未(1823) 金公履載留守時 合屬豐德 又請得兩南還穀二萬石 每年本府及豐德田稅入三萬二千五百餘兩(豐德田稅 爲一萬一千六百餘兩) 各道還耗作錢一萬二千兩 各邑軍兵番錢一萬九百餘兩 元定雜稅入一千五百餘兩 新定雜稅入一萬一千餘兩 債邊入五千餘兩 遂分割各庫 改定事例 以爲逐歲支用之資.”

70) 兩南에서 확보한 환곡 2만석의 耗條 2천석을 1석 5냥의 상정가로 계산하여 합한 수치이다.

71) 『비변사등록』 순조 24년 3월 1일. “開城留守 金履載狀啓則以爲 本府債錢 二十三萬二千二百七十五兩零中 前後所捧爲七萬三千五百十九兩零.”

3. 개성상인의 상업활동과 자본축적

1) 시전상업과 廩契

한말 일제초기 개성의 상업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개성상인들은 상품유통상의 위치에 따라 客主, 都賣商, 居間, 소매상, 座商, 지방행상인 場軍으로 구분되고 있다. 거간은 다시 일반 상품을 중개하는 唐貨居間, 금전의 중개를 담당하는 換錢居間, 인삼거래를 중개하는 蔘居間으로 구분되었는데, 당시 蔘거간으로 60여인이 활동하고 있었다. 場軍은 소자본으로 화물을 등에 지고 육로행상을 하는 褌負商, 상당한 자본으로 말에 상품을 운반하는 主客 또는 借人과 差人으로 다시 구분되었다.⁷²⁾

이러한 상인중에서 시전상인은 도매상과 坐商을 겸했던 富商이었다. 시전상인들은 개성부에 商賈稅를 낸 대가로 금난전권을 소유했으며, 시전영업이 어려울 때에는 개성부로부터 자본을 대출받는 특혜도 받았다.⁷³⁾ 한양 시전이 국역부담을 대가로 금난전권을 보유하고, 화재등 큰 손실을 입었을 때 왕실과 조정으로부터 內帑을 비롯한 각종 지원을 받아 시전을 유지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운영된 것이다.⁷⁴⁾

1910년대까지 개성의 시전은 緞廩, 白木廩, 靑布廩, 魚果廩, 門外白木廩, 衣廩, 紙廩, 鎡器廩, 櫛廩, 砂器廩 등 16개가 있었지만, 근대적 유통체제가 유입되면서 점차 사라져 1925년에는 비단을 파는 緞廩, 무명을 취급하는 白木廩과 중국산 면포를 파는 靑布廩, 어물과 과일류를 판매하는 魚果廩만이 남아 있었다.

72) 善生永助, 1925, 「商人及商廩」『朝鮮人の商業』, 朝鮮總督府, 13~17쪽.

73) 『비변사등록』 순조 24년 3월 1일. “開城留守 金履載狀啓則以爲 本府債錢(중략) 本府各廩所在三千一百兩.”

74) 고동환, 2008, 「조선후기 왕실과 시전상인」『서울학연구』 31 참조.

개성의 시전상인들은 한양의 시전과 마찬가지로 동업조합을 결성하여 신입조합원의 가입여부 결정, 都員상호간의 상호부조등의 일을 처리하였다.⁷⁵⁾ 한양 시전의 동업조합은 都中이라고 했지만, 개성의 조합은 塵契라고 지칭하였다. 1925년 당시 백목전, 선전, 청포전의 전계가 남아있었는데, 전계의 결성시기는 모두 1836년이며, 각 전계의 계원수는 백목전 20명, 선전 17명, 청포전 37명이었다.⁷⁶⁾

개성의 塵契도 한양의 시전처럼 立議나 完議와 같은 전계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였다. 1912년에 개정된 縮塵契規則을 통해 개성 시전 동업조합의 조직과 운영을 살펴보도록 하자. 선전영업인으로 조직된 선전계의 목적은 계원들 상호간의 自衛를 보장하고 영업의 발전을 기획하며, 매매상의 폐해를 시정하는 것이었다. 전계의 사무소는 개성 남대문안에 선전 都家에 위치하였다. 선전계는 영업상 공동시설이 필요할 때 자금을 주선, 차입하였고, 각종 상품을 보관하는 창고업무도 행하였다. 임원은 塵契長 1명, 塵契任 2명이었다. 계장은 전계의 모든 일을 통할하는 조합장이었으며, 계임은 계장의 지휘하에 사무를 처리하는 서기였다. 임원의 임기는 1년이었으나 재임할 수 있었으며, 3기 중임은 불가능했다. 계원의 가입금은 3圓이었고, 계원들은 매달 20錢의 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녔다. 도가의 창고를 사용할 때, 계원들은 도가 1間당 1년에 3圓의 사용료를 지불하였다. 계원은 전계 전체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졌으며, 전계 소유재산에 대해서도 각자 지분을 소유하였다. 만약 전계에서 탈퇴하면 이와 같은 의무와 권리가 소멸되었다. 전계의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었으며, 정기회는 9월 31일에 개최되었다. 정기회에서는 임원의 개선과 함께 전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보고하였다. 만약 수지 잉여금이 발생하면, 이를 계원에게 대출하여 이

75) 고동환, 2002, 「조선후기 시전의 구조와 기능」『역사와 현실』 44.

76) 홍희유, 1989, 『조선상업사 - 고대 중세 -』,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자를 받았다. 계원이 규칙을 어길 경우 契中の 결의로 10錢이상 2圓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除名처분을 할 수 있었다. 동업조합이었기 때문에, 계원 상호간의 상호부조 관행도 철저하게 지켜졌다. 계원 본인이 사망하거나 父母喪을 당했을 경우 弔賻會葬禮를 거행하였다.⁷⁷⁾ 다음의 〈그림 1〉은 한말 개성에서 치러진 시전상인의 장례식 모습으로서, 百木塵과 개성부 各塵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진 깃발을 들고 장례식에 참여하고 있다.



〈그림 1〉 한말 개성부 시전 상인의 장례식 모습

緡塵契외에도 靑布塵契나 白木塵契의 규칙도 있었는데, 내용은 거의 동일하였다. 다만 가입비, 도가사용료, 정기회의 3조항만이 다를 뿐이다. 청포전계의 경우, 가입비는 15원, 도가사용료 10원, 정기회는 8월 20일이었고, 백목전계의 가입비는 6원, 도가사용료 8원, 정기회는 2월과 8월 두차례였다.

都家は 塵契에 부속한 공동창고와 사무소였다. 도가는 장방형의 건

77) 善生永助, 1925, 「開城 南大門內 緡塵契規則 (大正元年九月改正)」『朝鮮人の商業』, 朝鮮總督府, 13~17쪽.

물로서 가운데에는 넓은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고, 마당 중앙의 사무실에서는 임원인 계장과 계임이 사무를 보았다. 정면을 입구로 하고, 문의 좌우 및 다른 3방향은 낭하로 연결되며, 의자가 있는 間口 1칸 내지 2칸 단위로 작은 방이 있는데, 이곳이 창고로 이용되었다. 청포전계의 도가는 28방이었으며, 그중 24방이 창고로 사용되었다. 상품을 보관한 창고시설이었기 때문에, 야간에는 돌아가면서 숙직자를 정해 이를 지켰다. 자기 차례의 숙직을 하지 못할 때는 過怠金を 징수하였다는데, 청포전계의 과태료는 하룻밤에 20錢이었다.

전계에 가입하지 않고 전계에서 취급하는 물종을 판매할 경우 亂塵이라 하여 상품을 몰수하였다. 전계의 가입여부가 난전의 기준인 것이다. 각 시전의 영업구역도 엄격히 규정되었다. 靑布는 남대문밖, 白木〔무명〕은 남대문 안의 北本町에서만 판매해야 했다. 판매구역을 벗어나서 영업할 경우는 난전과 마찬가지로 상품이 몰수되었다. 시전상인들 사이에 소소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관행이 있었다. 한양의 경우 육의전 도중이 이러한 소임을 담당했는데,⁷⁸⁾ 개성에서는 16개 시전중에서 규모가 큰 緇塵, 白木塵, 靑布塵, 魚果塵 등 4개의 시전이 이 역할을 담당하였다. 四大塵의 중재에 의해 자율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는 四大塵의 契長이 원고, 피고를 불러 사정을 듣고, 告目을 개성부에 제출하여 그 판결에 따라 처결하였다.

개성의 시전상인들의 영업방식은 한양의 시전상인과 동일하였다. 그들은 방석에 앉아서 손님을 맞았으며, 점포에는 견본품만 진열하고, 대부분의 상품은 도가에 보관하였다. 그러나 1910년 이후 일본의 상품진열방식을 도입되면서 상점의 정면 및 그 양측에 여러 단으로 쌓아서 진

78) 시전상인간의 분쟁을 육의전 도중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동환, 1995, 「19세기 후반 刀子塵謄給文書에 대하여」『서울학연구』 6 참조.

열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⁷⁹⁾

2) 상업조직과 都賈商業

개성상인의 본령은 시전상업보다는 전국의 시장을 무대로 전개된 상업활동이었다. 개성상인들은 대부분 소나 말을 소유하고 여러 명이 행상단을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15세기 후반 전라도 무안지역에서 출현한 농촌場市가 16세기 이후 삼남지역에 보편화되면서 개성상인들의 행상활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행상들은 행상단을 꾸려 활동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상인과 달리 상인조직이 발달하였다.

조선초기에는 物主人 富商과 사용인인 差人이 존재했지만,⁸⁰⁾ 조선후기에는 조직이 더욱 세분화되어 差人, 書士, 首使喚, 使喚 등으로 구성되는 商業使用人 체제가 정립되었다. 수사환과 사환은 상업활동의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사환은 소년점원으로서, 좋은 집안의 자제를 상업견습생으로 다른 집에 위탁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사환에게는 일정한 보수가 없었으며, 매년 1-2회 의복, 신발 등을 지급할 뿐이었다. 사환은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수사환으로 승진하였다. 수사환도 사환과 마찬가지로 보수가 없었지만, 영업성적에 따라 결산기에 이익의 일부분을 지급받았다. 재직 7-8년이 지나 신용을 얻게 되면, 주인은 수사환에게 소자본을 주어 독립시켜 지방행상을 하게 하였다. 서사는 부기장부인 四介置簿의 작성 등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차인은 주인의 신용을 얻은 자가 독립하여 지방행상 및 금융에 종사하는 자였다. 이렇게 보면 차인은 독립된 상인이었지만, 자금의 유통이나 상품의 거래는 주인의 지휘하에 이루어졌으므로 사용인의 범주에 드는 상인이었다.

79) 이상 개성 시전상업의 모습에 대해서는 善生永助, 1925, 앞의 책 참조.

80) 박평식, 2000, 『朝鮮前期 商業史研究』, 지식산업사.

차인은 상업자본가를 대신하여 영업하는 점포의 고급사용인으로서, 일정한 월급을 받거나 자기책임하에 진행된 손익계산에 의하여 이익분배에 참여하기도 하였다.⁸¹⁾ 1930년대 기록에 의하면 차인의 규모는 대상인의 경우 30명 이상, 소상인의 경우는 2-3명 규모였다.⁸²⁾

이와 같은 상업조직을 기초로 개성상인들은 전국의 주요지역에 松房을 설치하여 차인을 상주시키고 그 지역의 상품유통을 담당하게 하였다. 개성상인들은 자본력은 물론 조직력에서도 국내의 여타 상인에 비해 훨씬 월등했으므로 전국을 대상으로 한 都賈상업을 전개할 수 있었다. 18세기 중엽에는 개성상인들은 白綿紙를 생산하는 삼남지역의 제지업자들에게 선금을 주고 이를 독점하였으며, 1810년(순조 10)에는 갖의 원료 涼臺가 생산되는 제주의 길목인 강진과 해남에 차인을 파견하여 양태를 매점함으로써 서울 涼臺廬의 상권을 침해하기도 했다.⁸³⁾ 또한 1817년(순조 17)에는 면화의 흉년을 계기로 황해, 충청지역의 면화를 독점하여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기도 했다.⁸⁴⁾ 이와 같은 개성상인의 도고상업은 한양 시전상인들의 독점상업과는 달랐다. 한양 시전의 독점은 봉건적 특권에 의거한 것으로서, 다른 상인과의 경쟁이 봉쇄된 상업행위라고 한다면, 개성상인들은 자체의 조직력과 자본력에 기초한 독점으로서 다른 상인과의 경쟁이 전제된 독점이었던 것이다.

81) 善生永助, 1925, 앞의 책 참조.

82) 박재청, 市邊小論(6), 『高麗時報』 1933년 8월 16일자(오성, 2002, 「한말~일제시대 개성의 市邊制」 『한국근현대사연구』 21에서 재인용).

83) 『비변사등록』 순조 10년 1월 10일. “涼臺廬市民等以爲 近來松商益熾 操縱權利 又爲都賈於濟州 出來咽喉之康津海南等地 直爲派送於都會各處 故京城入來絶無 物種極貴 松商都賈之弊 各別痛禁 依帽子廬人之下往灣府 定價以給於松商例 送人於康津海南等處 從時價定給於松商及各處事也.”

84) 『비변사등록』 순조 17년 11월 11일. “綿農連年告歉 而惟幸兩西稍勝 故富商之都執權利 (중략) 待價操縱之弊 松京尤甚.”

3) 船商活動

개성상인들의 활동은 육로시장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조선시대 私商세력중에서 상당한 자본력을 소유한 상인들이었기 때문에, 개성상인들은 船商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15세기 후반 金時習의 『金鰲新話』에 등장하는 洪生이라는 작중 인물은 商船을 이끌고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던 당시 개성 상인을 전형으로 한 가상의 인물이었다. 이처럼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만큼 개성 상인의 행상 활동은 전국 규모로 펼쳐지고 있었다.⁸⁵⁾

전국을 무대로 전개한 개성상인의 선상활동은 1753년(영조 29) 일 본으로 표류했다가 송환된 개성상인 沙工 金中才의 사례에서 잘 알 수 있다. 개성부 남면 예성강에 사는 사공 김종재는 개성 출신 格軍 9명과 전라도 강진 출신의 격군 金勝儉등 3명과 함께 개성부의 物主 金振哲의 돈 2,200냥을 가지고, 전주 金七奉의 배를 타고 1752년 2월 13일 예성강을 출발하였다. 2월 20일에는 충청도 은진의 강경포에서 쌀 540석을 구매한 뒤, 다시 5월 5일 경상도 영일 포항에서 가지고 간 쌀을 명태어 50同과 미역 340同으로 교환한 뒤, 윤9월 17일 강원도 삼척에서 미역을 팔아서 남긴 돈 1,500냥과 소소한 雜魚를 구매한 뒤에 10월 초 1일 삼척을 출발하여 개성으로 돌아오다가 10월 5일 장기 앞바다에서 표류하였다.⁸⁶⁾ 이 사례에서 보면, 개성상인들은 物主와 사공, 격군들이

85) 정성일, 2005, 앞의 논문 참조.

86) 『典客司日記』 권11, 丁丑(1753) 六月二十一日. “沙工金中才所告內 矣徒等十名段 俱以開城府南面禮城江所居之民是白遣 金勝億矣徒三名段 以全羅道康津居民 累年同務興販乙仍于 矣徒十三名 開城府居均役廳屬金七奉船隻良中 物主同府居金振哲錢文二千二百兩持載 上年二月十三日 自禮城江同騎發船 同月二十日往于忠清道恩津地 質米五百四十石離發 五月初五日到慶尙道迎日浦項發賣 換質明太魚五十同 逢授於食主人朴守芑家 又質甘藷三百四十同 載持發船 閏九月十七日往于江原道三陟地 餘錢一千五百兩 質載小雜魚

기능에 따라 확연히 구분되었고, 사공 김중재는 船長이면서 동시에 선상단의 우두머리로 활동하였다. 물주 김진철은 개성의 부상이었고, 사공 김중재는 차인으로 활약한 것으로 이해된다. 자본규모도 2,200냥, 거래규모도 쌀 540석에 달했던 이 선상은 개성의 예성강, 충청도 은진 강경포, 경상도 영일 포항, 강원도 삼척을 한번의 항해에서 포괄하고 있다. 이 사례에서 우리는 18세기 중엽 개성상인들의 활동이 전국을 무대로 한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인삼을 매개로 한 국제무역

17세기 후반이후 청과 일본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개성상인들은 의주의 灣商, 동래의 萊商과 함께 국제무역을 주도하는 상인으로 성장하였다. 국내 상업을 통한 이익보다는 국제무역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이 훨씬 많았다. 개성상인이 조선후기 대표적인 私商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후술하는 삼포경영, 홍삼제조와 함께 이와 같은 국제무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개성상인들은 中江開市에 참여하였다. 중강개시는 임란시 창설된 이후 중단되었다가 증원을 장악한 청나라의 요청에 의해 1646년부터 재개되었다. 2월 15일과 8월 15일 1년에 두차례 열린 중강개시에서 조선은 農牛, 소금, 紙物과 海帶, 해삼, 면포, 사기 등을 수출하였다. 개성상인들은 처음부터 중강개시에 참여했는데, 개성상인이 부담하는 교역량은 51駄에서 1651년(효종 2) 31駄, 1653년(효종 4) 21駄로 줄어들었다.⁸⁷⁾ 중강개시에 참여하면서 중국과의 교역경험을 쌓은 개성상인들은

十月初一日發船 回向本土 初五日二更量 到于長鬐前洋 猝遇狂風 漆夜中不能制船 所載卜物 沒數投海 前後帆竹斫伐之際 格軍中康津居金大段 爲帆風所驅 墜落海死 不知屍身之所着是白遣 轉漂大洋.”

87) 『승정원일기』 효종 4년 4월 8일, “開城留守狀啓粘目 傳曰 開市所送駄數

이후 의주상인과 함께 중국과의 교역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다.

원래 개성상인과 같은 私商들의 무역행위는 불법으로 지목되어, 정부에서 철저히 통제하였다. 그러나 1681년(숙종 7)부터 정부에서는 사행비용과 군수품조달을 목적으로 부상들을 貿販別將에 임명함으로써 사상들의 대외무역 참여의 길을 열었다. 개성상인들은 貿販別將을 독점함으로써 대청교역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⁸⁸⁾ 무역별장제의 도입을 계기로 대청무역의 주도권이 譯官에서 사상으로 넘어간 것이다.⁸⁹⁾

17세기 중엽부터 18세기 전반까지 일본은 중국과의 직교역이 두절된 상태였으므로, 조선을 중개지로 하여 중국과 교역할 수밖에 없었다. 개성상인들은 인삼을 매개로 중국과 일본을 매개하는 중개무역을 수행하였다.⁹⁰⁾ 인삼 유통허가권을 보유한 개성부에서 이 권한을 개성상인들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개성상인들은 인삼이 재배되기 이전부터 국내 인삼유통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⁹¹⁾

개성상인들은 인삼유통권 장악을 기초로 중개무역에 참여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1725년(영조 1) 개성유수 李堉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既減十駄 則所餘應送之數幾駄耶問啓事 傳教矣 開市所送駄數 當初開城府所定五十一駄 而辛卯年因本府民狀 減除二十駄 其後仍存 只三十一駄矣 頃又因沈之漢上疏 減其十駄 兩西各五駄移定 自今開城府應送之數 二十一駄矣.”

88) 『비변사등록』 영조 1년 10월 2일. “使行赴燕時 松都 海西 平兵管運餉五處別將 曾以土着人定送 而近來松都商賈輩 納價五營 擔當入去 盡籠一國之人 蔘 注於倭館 受出倭銀 直走燕市 獨權其利 循環不已 使銀蔘 不得通行於國中 入燕之際 駄銀無數 潛越潛市 奸濫狼藉 害國病民 其弊不一.”

89) 유승주, 1970, 「조선후기 대청무역의 전개과정 - 17, 18세기 赴燕譯官의 무역활동 -」 『백산학보』 8; 이흥두, 1998, 「17세기 對淸交易에 관한 연구」 『국사관논총』 81; 김종원, 1999, 『근세동아시아관계사연구』, 해안 참조.

90) 주 88) 참조.

91) 오성, 1989, 「人蔘商人和 禁蔘政策」 『朝鮮後期 商人研究』, 일조각.

松商들이 인삼이 나는 곳에 널리 차인을 파견하여 인삼을 독점한 뒤 일본에 판매한다. 그러므로 일본에서 나오는 銀貨는 모두 송상에 게 돌아간다. 송상들은 일본에서 얻은 은화를 가지고 중국에서 교역을 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銀貨와 인삼이 극히 귀하게 되었다. 약재로 쓸 물품도 구할 수 없게 되었으니 節痛한 일이다.⁹²⁾

즉 개성상인들은 전국에서 채취되는 인삼을 독점하고, 이를 일본에 비싼 값으로 판매하여 은화를 받은 뒤, 이 은화로 중국산 비단이나 고급약재를 구입하여 국내시장이나 일본에 판매하였기 때문에 국내의 인삼과 은화가 품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성상인들의 중개 무역은 매우 활성화되어 개성상인들은 중국에서는 외상 거래가 가능하였다. 1725년(영조 1) 沈陽 冊門의 중국상인들과 외상으로 거래하던 개성상인이 빚을 갚지 않아 외교적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⁹³⁾

18세기 전반까지는 가삼재배가 보편화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개성상인들은 江界를 비롯한 자연삼이 생산되는 지역에서 차인들을 파견하여 자연삼을 독점하였다.⁹⁴⁾ 개성상인들이 이처럼 인삼무역에 주력한 것은 일본에 무한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16세기까지 일본이 조선에서 수입해 가는 주된 물품은 면포였다. 이때까지 면포를 생산하지 못

92) 『비변사등록』 영조 1년 9월 25일. “開城留守李堦狀啓內(중략) 松商輩遍滿於我國產蔘處 隨採盡貿 入送倭國 倭國所出之銀貨 盡歸於松商 松商亦爲沒數持入於彼中而行商 以此之故 我國銀蔘絕貴 藥物亦不能救急 可謂絕痛.”

93) 『비변사등록』 영조 1년 9월 25일. “近來松商之弊極矣 瀋陽柵木開市 創設於數十年來 多齎銀貨極爲濫雜 至有負債於彼人而不報 臣之赴燕時 胡人亦多有所訴怨者 此等事日後若有彼中請問之舉 則其辱國爲如何哉.”

94) 『비변사등록』 영조 28년 6월 10일. 江蔘變通節目. “近來蔘貨漸貴 幾至絕種之境 曾前則江蔘品好者 極不過每錢二兩之錢 而今則日益刁蹬 殆無定價 究其弊源 則專由於倭人求貿者 乃是江蔘 故勿論松商 萊商 盡括江界一府之蔘 潛自私賣於萊館 而所謂無一形影於京局是白乎等 以國中藥用之路 幾乎節絕 雖以重價求貿 亦無可買之路是白置.”

했던 일본은 조선의 면포를 수입하여 의류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16세기말 조선인들로부터 면화재배와 면포직조기술을 배워간 이후 일본의 면포수입은 크게 줄었다.⁹⁵⁾ 그러므로 17세기 중엽 이후 일본에서는 면포대신에 조선의 인삼을 주된 교역품으로 요구하였다. 일본에서는 조선인삼을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약재로서 무한한 수요가 있었다.⁹⁶⁾ 일본에서의 인삼수요 급증으로 국내 인삼의 가격도 크게 올랐다. 1740년(영조 16: 庚申)경에 강계삼의 上品은 1근당 銀 100냥, 中品은 銀 80냥, 下品은 銀 60냥이었지만,⁹⁷⁾ 1752년(영조 28)에는 상품은 1근에 銀 200냥, 중품은 160냥, 하품은 100냥으로 두배가량 올랐다.⁹⁸⁾ 12년 사이에 가격이 두배로 오른 것이다. 인삼가격의 급등으로 개성상인들이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유리한 기회를 조성한 것이었다.

원래 자연산으로 평안도 강계나 강원도지역에서 채취되던 산삼이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말에서 18세기초라고 알려져 있다. 숙종연간에 전라도 同福縣의 한 여인이 山蔘씨를 받아 재배에 최초로 성공하였고, 이 여인의 성공한 방법을 개성상인이 수용하여 18세기 중엽이후 개성에서 본격적인 인삼재배가 확산되었다. 개성지역에서 인삼재배가 본격화되면서 인삼무역을 주도했던 개성상인들의 이익도 훨씬 커졌다. 후술하는 바처럼 개성상인이 직접 삼포를 경영하여 인삼을 재배하고, 홍삼을 제조하게 됨으로써 개성상인의 자본규모도 서울의 대상인과 비

95) 李泰鎮, 1991, 「國際貿易의 성행」『한국사시민강좌』 9.

96) 『星湖僊說』 권14 人事門, 蔘商.

97) 『승정원일기』 영조 28년 7월 19일. “榮國曰 臣待罪西藩時 蔘一錢 價至六兩 故以此定之矣 今則江蔘上品 定百兩 中品八十兩 下品六十兩 亦商量定之似宜 前節目 改付標可矣.”

98) 『비변사등록』 영조 28년 6월 10일. “因本道狀聞 更爲定式爲白乎矣 上蔘每斤價 爲銀二百兩 中蔘每斤價 爲銀一百六十兩 下蔘每斤價 爲銀一百兩 此則比之於庚申折價 皆爲倍蓰.”

등한 정도로 커졌다.

개성상인들은 정부의 허가하에 이루어지는 공식적 인삼무역외에 밀무역에도 적극적이었다. 1821년(순조 21) 기록에는 정부의 공식 홍삼무역량은 1년에 200근이었지만, 密造되어 중국에 수출되는 홍삼은 수 천근에 달한다고 얘기하고 있다.⁹⁹⁾ 공식무역에 비해 밀무역 규모가 열 배이상이었던 것이다. 19세기 서해상에서 荒唐船이 자주 출몰했던 것도 홍삼을 밀수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홍삼 잠매가 성행한 것은 包蔘에 비해 잠매되는 인삼의 가격이 1/3정도로 헐했기 때문이다. 인삼잠매의 주체도 개성상인이었다. 인삼잠매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의주에서의 인삼밀무역을 철저하게 통제했는데, 개성상인들은 정부의 통제를 피하여 서해안에서 밀무역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이의 대표적인 사건이 1864년(고종 1)의 밀무역사건이었다.

1864년 우포도청에서는 황해도 옹진의 여러 섬에서 중국의 불법무역선(荒唐船)과 홍삼을 밀무역하는 일당을 체포하였다. 이 밀무역사건의 주모자는 개성 新谷里에 거주하는 상인 林鳳益, 林時衡 형제와 개성 北部 堂上橋에 거주하면서 蔘圃를 경영하는 洪秉九였다. 홍병구는 삼포주로서 인삼상인인 임봉익 형제에게 160근을 판매하였고, 임봉익 형제는 物主 趙寬燮에게 2,500냥을 빌려 인삼을 구매한 후에 인천에 거주하는 朴保卿, 吳奉吉등과 함께 조관섬의 배를 빌려타고 옹진의 滄連島에서 중국의 황당선에 인삼과 西洋木, 野蔘紬, 羊皮, 令鉛斤 等物을 교역하였다가 발각된 것이다.¹⁰⁰⁾ 물주의 돈 2,500냥을 빌려 密造된 홍

99) 『순조실록』 권24, 순조 21년 11월 丙子. “開城留守 吳翰源 疏略曰 而臣謹察營下居民 多以種蔘爲業 每歲入燕紅蔘 專出於此地 今若以包蔘二百斤 劃給本府 一依司譯院收稅之規 則公私兩便 庶有蘇裕之望 蓋譯院包蔘 元有二百斤定數 而灣商之年年造蔘 冒禁潛越者 實不下屢千斤 此則譯院之所不能盡防也.”

100) 『승정원일기』 고종 원년 8월 1일. “右邊捕盜廳言啓曰 今春夏之間 潛商輩

삼 160근을 가지고 밀무역을 행했던 이들에 대해 조정에서는 홍병구는 홍삼을 밀조했다는 죄목으로, 임봉익, 오봉길, 박보경은 밀무역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모두 처형하였다. 임봉익의 형 임시형은 居間만 했기 때문에 사형은 면하였으며, 物主人 조관섭은 높은 이자를 준다는 핑에 빠져 돈과 배를 빌려주긴 했지만, 직접 밀무역에 가담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형을 면하였다.¹⁰¹⁾

홍삼을 매개로 한 무역외에도 개성상인은 중국에서 비단을 수입하여 서울의 立塵에 넘기는 무역상으로도 활약하였다. 개성상인들은 서울에서 중국산 비단의 독점적 판매권을 장악한 입전과 계약을 체결하여 자신들이 반입하는 중국산 비단에 대해 隻貨는 한 마리(駄)당 10냥, 通緞은 每匹 1전5분, 立緞은 매필 3분씩 납세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고 있다. 만약 개성상인들이 이와 같은 分稅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난전율로 처벌되고 있다.¹⁰²⁾ 개성상인들은 중국산 물화의 수입상이긴 했지만, 입전상인에게 분세를 납부해야만 영업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처럼 계약

乘船往來於黃海道甕津諸島 交易物貨之說 浪藉入聞 故沿邊各處 別岐偵探 則仁川浦口執贓交易唐物先捉船人金順元 李成三及主事人金正連 居間人 林時衡 蔘主洪秉九等 同庭各取口招 詰問其同黨諸漢 則金正連所供內 松都居林鳳益 林時衡兄弟 與仁川居朴保卿 吳奉吉等 得債二千五百兩於趙寬 變後 鳳益自主貿蔘一百十八斤(중략) 今年六月初 更爲登船 直向滄連島 逢着唐船換賣之時 矣身與朴保卿 金順元交易 而物件則西洋木野蔴紬三升 疋數及羊皮令鉛斤等物 換出載船而來(중략) 林時衡所供內 居生于松都新 谷 與弟鳳益蔘商 居間資生(중략) 洪秉九所供內 居生于松都北部堂上橋 蔘圖資生矣去年四月分 因林鳳益之所勸 潛蔘一百六十斤斥賣 而外他換賣 等事 實所不知云.”

101) 위와 같은 조.

102) 『立塵完議文書』, “本塵分稅之規 有名無實 故年前與松人 別般定式 而同官 段置 在京松人外 譯官馬主餘他唐貨貿販人處貿來 及灣商箕賈松人等直送 者 一依松人例 隻貨段 每駄十兩 通緞每匹一錢五分 立緞每匹三分式 收稅 爲乎矣 松人則分稅一款 若有一毫差錯是去等 依亂塵律施行爲遣.”

에 의해 입전에 중국산 비단을 납품했다는 사실은 개성상인들이 인삼 외에도 다양한 중국산 상품의 수입상으로서의 위치도 매우 공고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개성상인들의 자본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려주는 자료를 찾기 어렵지만, 오늘날 남아있는 개성상인의 회계장부를 통해 대체적인 규모는 추정할 수 있다. 이 회계장부에 의하면, 1874년 6월 13일부터 10월 14일까지 4개월동안 상품구입 총액은 10만 3,469냥이었다. 개성상인 한 사람이 4개월간 취급하는 자본규모가 10만냥에 달했다는 점은 19세기 개성부 1년 수세총액은 8~9만 냥에 불과했다는 점과 비교하면, 개성 상인의 자본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¹⁰³⁾

5) 신용에 기초한 금융거래

개성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찍 금속화폐가 유통된 지역이었다. 1678년(숙종 4) 상평통보가 주조 발행되기 훨씬 이전부터 개성에서는銅器나銅鐵덩어리가 화폐로 유통되었다.¹⁰⁴⁾ 화폐유통과 함께 농업보다 상업이 주된 산업이었기 때문에 개성에서의 대부분 거래는 화폐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신용을 기초로 한 거래도 활성화되었다. 식량이나 의류, 심지어 반찬가게에서도 1년동안 거래된 액수를 연말에 한번, 혹은 7월과 12월의 2회에 나누어 대금을 치루는 것이 보편적인 거래관행이었다.¹⁰⁵⁾

103) 홍희유, 1962, 앞의 논문 참조.

104) 『松都誌』(1648년) 土俗, “舊以銅器計數爲貨 其後以銅鐵之塊 計斤兩爲貨 今則用錢爲貨 如中原民甚便之.”

105) 마중도, 1970, 「개성인」『開城』, 126쪽(오성, 2002, 「한말~일제시대 개성의 市邊制」『한국근현대사연구』 21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신용을 기초로 한 거래관행은 금융의 대부에서도 그대로 관철되었다. 그것이 개성지역에서만 존재했던 독특한 금융관행인 市邊制였다. 개성 상업이 크게 발달했던 17세기 무렵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시변제는 자금의 대여자와 차용자가 중개인을 매개로 물적 담보없이 신용을 바탕으로 대차관계를 맺는 제도였다. 시변제하의 이자율은 換중개업자를 통해 그때그때의 시세에 따라 정해졌는데, 개성상업계의 자금순환과 인삼등의 주요 물산의 생산과 집하, 시변자금의 결제일등의 사정에 따라 월 0.75%~1.50%로 다양했다. 시변제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환중개인이었다. 환전거간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이들은 唐貨居間과 합하여 博物契를 조직하였다. 박물계는 중매인 및 중개업자의 동업조합으로서, 1925년 현재 당화거간 86명, 환전거간 51인으로 조직되었다. 박물계에 가입하려면, 자산이 있는 2명의 보증인을 세우고 가입비 40원을 납부해야 했고, 모든 계열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했으며, 박물계원이 아니면 화물의 중매 및 금전의 중개는 불가능했다.¹⁰⁶⁾ 이와 같은 시변제에 기초하여 유통되는 금액은 1929년경 연간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¹⁰⁷⁾

개성의 자산가들은 자신의 자금이나 자신의 신용을 통하여 시변을 차용한 다음, 이를 상업적 수완이 있다고 판단되는 유망한 사람, 즉 차인에게 주어 영입하게 한 후, 여기서 얻어지는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가 많았다. 후술하듯이 자본순환에 최소 5-6년이 걸리는 삼포경영이 개성에서 자리잡을 수 있었던 이유도 이와 같이 담보없이 신용을 기초로 한 금융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개성주민 모두가 상업으로 생계를 이어갔다고 하지만, 주민들 사이

106) 善生永助, 1925, 「商人及商賈」『朝鮮人の商業』, 朝鮮總督府.

107) 오성, 2002, 앞의 논문 참조.

의 빈부에 따른 차이도 확인했다.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에게 자본을 대여받아 행상에 나간 반면, 부자들은 행상들에게 자본을 대여하고, 그 이자를 받아 致富하였다. 이처럼 개성에서는 상업과 금융업이 일찍부터 분리되어 있었다. 錢主와 행상의 관계는 주인과 차인·사환등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로 결합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독립적인 경리를 가지고 행상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므로 행상들이 손해를 보아 돈을 갚지 못할 경우 錢主인 富商들은 개성부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개성에서는 다른 어떤 고장보다 채무관계 소송이 많았다. 그러므로 관청에서 민간 사채를 대신 징수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할 때, 개성부만은 특별히 관청에서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징수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였던 것이다.¹⁰⁸⁾

신용을 토대로 한 거래관행이 정착된 개성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일찍 신용화폐가 유통되었다. 금속화폐의 유통이 한양보다 훨씬 빨랐던 것처럼 신용화폐 또한 전국에서 가장 일찍 유통되었던 것이다. 개성상인들은 전국의 시장을 무대로 장사를 했기 때문에, 결제수단으로 동전을 사용하는 것은 많은 불편이 뒤따랐다. 한말의 사례이긴 하지만, 1894년 조선을 여행한 독일인 헤쎄 바르텍은 50마르크어치의 상평통보의 무게가 75kg에 달하여, 운송에 나귀 한 마리가 필요하다고 했으며,¹⁰⁹⁾ 1903년 조선을 여행한 러시아인 바츨라프 세로세프스키는 러

108) 『연산군일기』 권46, 연산군 8년 9월 己丑. “開城居民 貧者則皆貸債于人 以行商爲業 富者則給債收贏 以爲生理 其民聚居城內 無土可以耕食 不然無以爲生 然凡貸債者 多是奸曲 還債之際 百般規避 若不許官徵給之 則債主坐失貸給之貨 無有更以給債爲事者矣 然則其前日爲商業者 無所仰給 生理窮乏 必散而之四方 其號爲富者 亦無所取利 必至貧困而已矣 如是則開城民戶 漸就凋殘 終失舊都模樣必矣 此非細故也 本府官吏無緊關聽訟事 徵給私債 有何煩擾 請依舊法施行.”

109) 김영자 편, 1997, 『일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나라 - 1894년, 헤쎄 바르텍 -』 『100년 전 유럽인이 유럽에 전한 조선왕국 이야기』, 서문당, 71~72쪽.

시아돈 100루블어치의 엽전은 5만개 이상으로 무게가 123kg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운반하려면 말 한 마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¹¹⁰⁾ 이처럼 상평통보는 액면가치가 낮아서 운송비용이 많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도중에 도적을 만날 위험도 상존했다.

이러한 동전운송의 비효율성과 원거리운송의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 개성 상인이 고안해 낸 것이 신용화폐의 일종인 換과 於音이었다. 환은 원거리에 동전을 보내거나 자신이 동전을 직접 가지고 가기 어려울 때 그것을 대신한 신용전표로서, 상인들 사이의 거래에 이용되었다. 예를 들면 물건을 거래하고 난 뒤에 그 대금을 서울에 가서 찾는 환을 가리켜 京換이라 불렀다. 개성 상인이 처음 쓰기 시작한 환 거래는 19세기에 오게 되면 개성 지역에서 통용되는 松換을 비롯하여 仁川換, 全州換, 宣川換, 鐵山換, 海州換 등의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널리 통용되었다. 환과 어음은 18세기 후반경 서울과 평양, 개성등 대도시에서 보편화되었고, 환거래의 일회규모는 18세기 후반 400냥에서 1,500냥규모였으나 19세기 이후에는 수만냥까지 거래될 정도였다.¹¹¹⁾

개성상인들의 상업활동에서 특기해야 하는 점은 給次秩, 捧次秩, 利益秩, 所費秩 등 네 개질로 나누어 계산하는 고유한 복식부기법인 松都四介置簿法을 고안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학적인 복식부기법은 조선 초기부터 발생하여 개성의 시전은 물론 송방, 객주, 여각등과 고리대업자 사이에 널리 이용되고 있었다.¹¹²⁾

110) 바츨라프 세로세프스키(김진영외 옮김), 2006, 『코레야 1903년 가을』, 개마고원, 41쪽.

111) 홍희유, 1962, 앞의 논문 참조.

112) 조익순·정석우, 2006, 『조선시대 회계문서에 나타난 사개송도치부법의 발자취』, 박영사; 吉田光男, 1988, 「開城簿記研究の再檢討」 『조선사연구회논문집』 25; 김갑중, 1995, 「한국의 사개송도치부법과 회계장부조직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상학회』 8.

6) 蔘圃경영과 紅蔘제조

개성상인들은 국내 상업과 국제무역에서 축적한 자본을 생산부문에 투자하였다.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광산을 채굴하는 잠채광업에 투자하여 광산물주가 되기도 하였고, 삼을 캐는 사람들에게 미리 蔘價를 주고 정해진 날짜에 인삼을 받는 등, 생산부문에 대한 선대제적 경영도 시도하였다. 개성상인들의 생산부문에의 투자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분야가 인삼 재배업과 홍삼제조업이었다.

인삼재배는 동일 면적의 곡물생산에 비해 그 수익이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1900년의 자료에 의하면 삼포경영의 수익률은 15배로 추정되고 있다.¹¹³⁾ 이처럼 인삼재배가 큰 이익을 남기는 분야였기 때문에, 지방행상을 통해 돈을 번 개성상인들은 귀향하여 인삼재배에 뛰어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므로 17세기 후반에는 개성주민들에 대해서 ‘행상을 업으로 한다[民業行商]’라고 표현했지만, 1821년(순조 21)에는 ‘개성주민의 다수가 인삼재배로 업을 삼는다[多以種蔘爲業]’라고 표현하고 있다.¹¹⁴⁾ 이러한 표현의 변화는 19세기 이후 상업보다 인삼재배가 더 보편적인 생계수단으로 바뀌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개성상인들이 상업에서 인삼재배로 주된 업종을 바꾸었다는 것은 개성상인들이 상업자본을 인삼재배에 투자함으로써 농업자본가로 전환하였음을 의미한다. 인삼재배를 개성상인들이 주도하게 된 것은 인삼재배에 적합한 토질과 더불어 수확까지 길게는 6,7년, 짧으면 4,5년의 장기간 동안 자금을 투여할 수 있는 자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개성에서는 신용으로만 돈을 융통할 수 있는 市邊制와 같은 금융제도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장기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삼포경영이

113) 러시아 대장성(정문연 역), 『국역한국지』, 447쪽.

114) 주 98) 참조.

가능했던 것이다. 비록 토질이 인삼재배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해도, 이와 같은 금융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인삼재배의 주도권을 개성지역에 내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삼포를 경영했던 개성상인들은 백삼을 홍삼으로 증조하여 중국에 판매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 홍삼의 제조법은 중국에서 도입된 것이다. 인삼에 대한 무한수요처였던 일본에서도 1723년경부터 인삼재배가 본격화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일본에 대한 인삼수출량은 점차 감소하였다.¹¹⁵⁾ 인삼수요의 감소를 代充한 곳은 중국이었다. 중국에서 인삼수요가 증가한 이유는 아편중독자의 독을 인삼이 풀어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¹¹⁶⁾ 중국인들은 백삼에는 독성분이 있다고 여겨, 이 독을 제거하기 위해 인삼을 증기로 찌서 말리는 홍삼제조법을 개발하였다. 중국에서 개발된 홍삼제조법은 개성에 도입되어 활용되었다. 중국과 달리 개성에서는 인삼의 독을 제거하는 것보다 인삼의 유통과 보관 과정에서 효능저하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었다.

인삼재배와 달리 홍삼蒸造는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하였다. 초기 서울의 경강에 위치했던 홍삼 제조장인 蒸包所는 1810년부터 인삼산지인 개성으로 옮겨왔다. 이를 계기로 소규모에 머물렀던 개성에서의 홍삼생산은 19세기 중반 대량생산체제로 전환하였다. 인삼재배의 성행과 인삼의 국제상품으로서의 성가가 높아지자, 1797년(정조 21) 조정에서는 중국사신의 경비로 책정된 팔포정액을 은 2000냥에서 인삼 120근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包蔘定額은 1811년 200근, 1823년 800근, 1834년 8천근, 1847년에는 2만근, 1851년 4만근으로 급속히 증액되었다. 1853년에는 2만5천근으로 감액되긴 했지만, 120근에서 4만근으로 무려 230배가 증가하는데 불과 50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

115) 정성일, 2000, 『朝鮮後期 對日貿易』, 신서원.

116) 『林下筆記』 28권 春明逸史 紅蔘.

다.¹¹⁷⁾ 포삼정책의 변동을 통해 우리는 인삼재배와 홍삼제조가 1830-40년대에 최절정에 이르렀고, 5-60년대에 약간 위축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세기 후반기에 약간 위축되긴 했지만, 18세기 후반의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삼포경영과 홍삼제조가 증가하였다. 1888년의 경우 개성지방에서는 165명의 삼포주가 200좌의 삼포를 경영하고 있으며, 총 採掘間數는 154,055간에 달하고 있다.¹¹⁸⁾

삼포경영에 어느 정도 자본이 투입되고 있는지를 밝혀주는 자료는 없지만, 개성상인의 외상정책에 의하면, 蓼圃都中에 투자하여 받은 이익배당금 규모가 1844년의 경우 1,661냥 4전 1푼, 1850년에는 2,200냥 2전 5푼에 달하였다.¹¹⁹⁾ 삼포도중 전체의 이익배당금이 아니라 都中 한 사람의 이익이 이 정도였기 때문에 전체 삼포도중이 얻는 수익규모는 수만냥의 규모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개성상인들은 인삼재배와 홍삼제조, 그리고 홍삼의 중국 수출을 통해 막대한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이다.

4. 맺음말

이상에서 農本體制하에 상업억제정책을 강하게 유지했던 조선왕조에서 왜 유독 개성지역에서만 末利를 드러내놓고 추구하는 상업을 영위할 수 있었는지를 개성의 도시구조와 개성상인들의 구체적인 상업활동을 통해 살펴보았다.

개성에서 상업이 발달했던 요인은 상인 중심으로 구성된 주민구성,

117) 이철성, 2000, 『조선후기 대청무역사연구』, 국학자료원.

118) 양정필, 2002, 앞의 논문 참조.

119) 홍희유, 1986, 앞의 논문 참조.

화폐경제를 기반으로 한 재정운영의 특성때문이었다. 18세기 중엽 개성은 公州에 비해 時起結은 30%에 불과했지만, 인구는 4만4천명인 공주보다 5천명이 더 많았다. 그러므로 토지와 家戶, 人丁에서 수취한 각종 賦稅를 기초로 운영된 대부분의 郡縣과 달리 개성은 상인에게 거둔 세금과 금전대부를 통한 이자수입을 재정의 기초로 삼지 않을 수 없었다. 상업이윤을 재정의 근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조선사회의 강력한 억말정책하에서도 개성에서는 상업을 용인하고 권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개성이 상업도시로 변성하게 된 요인중의 하나는 고려 개경의 도시기반시설을 계승했다는 점이었다. 개성에는 고려 개경의 시전이나 관아 건물 등이 있었기 때문에, 대구나 평양, 전주와 같은 감영이 소재한 행정중심지가 아니면서도 대표적인 상업도시로 성장한 것이다.

한편 개성은 조선후기이후 영역의 확장,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는 도시였다. 1796년(정조 20) 개성부는 金川郡의 小南面과 大南面, 長端府의 沙川以西지역과 白峙鎭을 병합하였고, 1823년(순조 23)에는 폐지된 풍덕부 전체가 개성부에 합병되었다. 인구의 증가는 훨씬 급격했다. 15세기 중엽 8,372명에 불과했던 개성의 인구는 1756년 34,285명, 1855년경에는 75,482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인구증가는 18세기 후반이후 개성 상업이 비약적으로 발달했음을 보여준다. 개성이 상업도시로 위상을 지닌 것은 조선 초기부터이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사상으로 정립된 것은 17세기 후반 이후의 일이었다.

私商을 대표하는 개성상인의 상업활동은 매우 다양했다. 개성부내의 상설점포인 시전상업, 전국적 行商과 都賈商業, 중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한 무역, 그리고 개성상인들 사이에서 행해진 금융활동과 인삼의 재배와 경작, 나아가 홍삼의 제조와 유통에 이르기까지 개성상인들의 활동영역은 상업분야 외에도 농업과 금융, 제조업에까지 미쳤다. 조선후기 상업 전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개성상인들의 활동은 육지시

장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조선시대 私商세력중에서 상당한 자본력을 소유한 상인들이었기 때문에, 개성상인들은 船商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자본규모도 2,200냥, 거래규모도 쌀 540석에 달했던 이 선상은 개성의 예성강, 충청도 은진 강경포, 경상도 영일 포항, 강원도 삼척을 한번의 항해에서 포괄하고 있다. 18세기 중엽 개성상인들의 활동은 전국을 무대로 한 것이었다. 17세기 후반이후 청과 일본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개성상인들은 의주의 灣商, 동래의 萊商과 함께 국제무역을 주도하는 상인으로 성장하였다. 국내 상업을 통한 이익보다는 국제무역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이 훨씬 많았다. 개성상인들은 인삼을 매개로 중국과 일본을 매개하는 중개무역을 수행하였다. 인삼 유통허가권을 보유한 개성부에서 이 권한을 개성상인들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개성상인들은 인삼이 재배되기 이전부터 국내 인삼유통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개성상인들은 인삼유통권 장악을 기초로 중개무역에 참여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개성상인들은 정부의 허가하에 이루어지는 공식적 인삼무역외에 밀무역에도 적극적이었다. 개성상인들의 자본규모는 1874년의 4개월동안 상품구입 총액이 10만 3,469냥에 달할 정도였다.

개성상인들은 국내 상업과 국제무역에서 축적한 자본을 생산부문에 투자하였다.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광산을 채굴하는 잠채광업에 투자하여 광산물주가 되기도 하였고, 삼을 캐는 사람들에게 미리 蓼價를 주고 정해진 날짜에 인삼을 받는 등, 생산부문에 대한 선대제적 경영도 시도하였다. 개성상인들의 생산부문에의 투자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분야가 인삼 재배업과 홍삼제조업이었다. 초기 서울의 경강에 위치했던 홍삼 제조장인 蒸包所는 1810년부터 인삼산지인 개성으로 옮겨왔다. 이를 계기로 소규모에 머물렀던 개성에서의 홍삼생산은 19세기 중반 대량생산체제로 전환하였다. 蓼圃都中에 투자하여 받은 이익배당금 규

모가 1844년의 경우 1,661냥 4전 1푼, 1850년에는 2,200냥 2전 5푼에 달하였다. 개성상인들은 인삼재배와 홍삼제조, 그리고 홍삼의 중국 수출을 통해 막대한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林下筆記』, 『立憲完議文書』, 『星湖僊說』, 『典客司日記』, 『擇里志』, 『松都續誌』, 『中京誌』, 『松都府誌』(1648), 『松都誌』(1782), 『東國輿地志』,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2) 저서

강만길, 1970, 『朝鮮後期 商業資本의 發達』, 고려대 출판부.
고동환, 1998, 『조선후기 서울상업발달사연구』, 지식산업사.
_____, 2007, 『조선시대 서울도시사』, 태학사.
김영자 편저, 1997, 『100년 전 유럽인이 유럽에 전한 조선왕국 이야기』, 서문당.
김종원, 1999, 『근세동아시아관계사연구』, 해안.
김창현, 2002, 『고려 개경의 구조와 그 이념』, 신서원.
러시아 대장성(최선·김병린 역), 1984, 『국역한국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바츨라프 세로세프스키(김진영외 옮김), 2006, 『코레야 1903년 가을』, 개마고원.
박용운, 1996, 『고려시대 開京연구』, 일지사.
박평식, 2000, 『朝鮮前期 商業史研究』, 지식산업사.
善生永助, 1925, 『朝鮮人の商業』, 朝鮮總督府.
오성, 1989, 『朝鮮後期 商人研究』, 일조각.
이철성, 2000, 『조선후기 대청무역사연구』, 국학자료원.
정성일, 2000, 『朝鮮後期 對日貿易』, 신서원.

조익순·정석우, 2006, 『조선시대 회계문서에 나타난 사계송도치부법의 발자취』, 박영사.

한국역사연구회, 2002, 『고려의 황도 개경』, 창작과 비평사.

홍희유, 1989, 『조선상업사 - 고대 중세 -』,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3) 논문

고동환, 1994, 「포구상업의 발달」 『한국사시민강좌-조선후기의 상공업』 9, 일조각.

_____, 1995, 「19세기 후반 刀子塵謄給文書에 대하여」 『서울학연구』 6.

_____, 2001, 「조선시대 개성과 개성상인」 『역사비평』 54.

_____, 2002, 「조선후기 시전의 구조와 기능」 『역사와 현실』 44.

_____, 2005, 「조선초기 한양의 형성과 도시구조」 『지방사와 지방문화』 8권 1호

_____, 2005, 「조선후기 상업과 국가권력」 『안동사학』 9·10합집.

_____, 2008, 「조선후기 왕실과 시전상인」 『서울학연구』 31.

吉田光男, 1988, 「開城簿記研究の再檢討」 『조선사연구회논문집』 25.

김태웅, 1999, 「조선후기 개성부 재정의 위기와 행정구역 개편」 『한국사론』 41·42합집.

박평식, 2004, 「조선전기 개성상인의 상업활동」 『조선시대사학보』 30.

서성호, 1994, 「한국중세의 도시와 사회」 『동양도시사속의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_____, 2000, 「고려시기 개경의 시장과 주거」 『역사와현실』 38.

慎鏞廈·權泰煥, 1977, 「朝鮮王朝時代 人口推定에 관한 一試論」 『東亞文化』 14.

양정필, 2002, 「19세기 개성상인의 자본전환과 蓼業자본의 성장」 『학림』 23.

- 오성, 1992, 「한말 개성지방의 蓼圃主」『고문서연구』 3.
- _____, 2002, 「한말~일제시대 개성의 市邊制」『한국근현대사연구』 21.
- 원유한, 1996, 「開城, 조선후기 실학사상의 요람」『동국역사교육』 4.
- 유봉학, 1993, 「조선후기 개성지식인의 동향과 북학사상 - 최한기와 김택영을 중심으로 -」『규장각』 16.
- 유승주, 1970, 「조선후기 대청무역의 전개과정 - 17,8세기 赴燕譯官의 무역활동 -」『백산학보』 8.
- 李泰鎭, 1991, 「國際貿易의 성행」『한국사시민강좌』 9.
- 이흥두, 1998, 「17세기 對淸交易에 관한 연구」『국사관논총』 81.
- 전룡철, 1980, 「고려의 수도 개성성에 대한 연구」『역사과학』 2·3호.
- 정성일, 2005, 「개성상인과 동래상인」『거상 전국상권을 장악하다』 두산동아.
- 홍영의, 2000, 「고려전기 개경의 오부방리 구획과 영역」『역사와현실』 38.
- 홍희유, 1962, 「송도 4개부기에 반영된 송상들의 도고 활동」『력사과학』 4호.
- _____, 1986, 「17세기이후 인삼재배의 발전과 자본주의적 삼포경영」『력사과학』 3호.

(Abstract)

The Urban Structure and Commerce of Gaesung in Late Chosun Dynasty

Ko, Dong Hwan(KAIST)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reason why merchants were able to operate commercial activities pursuing profits only in Gaesung area during the Joseon Dynasty that had strong commerce restriction policies based on agriculture-based system through the structure of Gaesung and concrete commercial activities of merchants in Gaesung.

The reason why commerce was allowed in Gaesung was because of its own characteristics such as residents who were mainly merchants and financial operation based on monetary economy. Differently from most Guns and Hyeons that were operated on the basis of various taxes collected from land, families and individuals, the bases of finance in Gaesung were mainly taxes collected from merchants and interest profits through loaning. Gaesung could not help allowing and recommending commerce even under strong commerce restriction policies of the Joseon Dynasty because its financial basis was commercial profits. Gaesung presented the expansion of the territory and a dramatic increase in population after the latter half of the Joseon Dynasty. Gaesung-bu incorporated some of Geumcheon-gun(Sonam-myeon and Daenam-myeon) and Jangdan-bu(Sacheon and Iseo areas) in 1796 (the 20th year of

King Jeongjo), and the entire Pungdeok-bu in 1823(the 23rd year of King Sunjo). Its population increased to 75,482 in 1855 from 8,372 in the middle of the 15th century and 34,285 in 1756.

Commercial activities of merchants in Gaesung representing private merchants were very various. Their activities ranged from the commercial area to agricultural, financial and manufacturing businesses such as Sijeon trade, permanent stores in the territory of Gaesung-bu, nationwide peddling and Dogo commerce, trade with China and Japan, financial activities among merchants in Gaesung, cultivation of Ginseng, and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red Ginseng. Merchants in Gaesung were able to get enormous profits by participating in intermediary trade on the basis of the right of ginseng distribution. They also invested capital accumulated from domestic trade and overseas trade into the mining industry or the ginseng industry. With regard to their capital size, the total amount used to purchase goods for four months in 1874 was 103,469 copper nyang.

Key Words : Gae-Sung, Commerce, Urban Structure, Late Chosun Dynasty, Ginseng, Red Ginseng, Sijeon (Licensed Shop)